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Halal) 인증 제도 연구

이 서 영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교법제 연구 12-20-⑫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Halal) 인증 제도 연구

이 서 영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Halal) 인증 제도 연구**
A Research on Halal Certification
Scheme for Access to Islamic Market

연구자 : 이서영(부연구위원)

Lee, Seo Young

2012. 10. 1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이슬람교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교로, 약 16억 명의 교도가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슬람권 문화의 확산에 따라 이슬람교도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할랄(Halal)식품이 보편화 되고 있음
- 아랍어로 “신성한” 또는 “허용된”이라는 의미의 할랄은 이슬람교리 상 이슬람교도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개념을 넘어 화장품, 의약품, 의류, 금융, 관광, 물류 등의 분야에까지 확산되어 하나의 문화·상업 코드로 자리 잡고 있음. 할랄 시장은 연 2조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으로, 이슬람교도 인구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임
-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할랄에 대한 이해와 할랄 인증의 획득이 불가피하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할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할랄 인증을 획득하여 전략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행하는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전략적으로 유리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할랄 개념의 근본인 이슬람법과 아울러 말레이시아의 사법제도 및 할랄 인증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이슬람권 시장 진출에 필요한 배경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및 화장품, 의약품 등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 이슬람법, 즉 샤리아는 이슬람의 성법으로, 이슬람교도의 종교생활 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도 적용되는 규범으로, 이슬람법의 근본이 되는 네 개의 법원(法源)은 종파와 학파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해석·적용되고 있음
- 할랄(Halal)은 이슬람교도에게 허용된 것들을 말하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람(Haram), 즉 금지된 것들이 있음. 할랄과 하람은 이슬람교의 유일신인 알라의 권한이며, 이슬람교도는 할랄만으로 필요충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대표적인 하람은 돼지, 피, 이슬람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식육, 알콜류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재료를 사용한 식품, 공산품 등도 하람으로, 섭취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할랄과 하람은 이슬람법의 법원인 코란, 하디스 등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으나, 종파와 지역에 따라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고, 종래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에 대하여 할랄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현대 이슬람법에서는 이슬람법 전문가의 견해인 파트와(fatwa)의 역할이 큼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공식 국교로 정하고 있고, 말레이인은 태생적으로 이슬람교도로 정해지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다문화·다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슬람문화와 타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슬람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법제도 상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남
-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 시대 법제도의 영향을 받은 일반 사법제도와 이슬람법을 이슬람교도에게 적용시키는 이슬람 사법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일반 사법제도 내에도 말레이 마을의 수장이 관할권을 가지는 평홀루 법원이나 사바 및 사라와크 지역의 토착민 부족장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 원주민 법원이 존재함. 이와 같은 법원의 존재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적 법의 적용이 받아들여지는 말레이시아의 법제도의 특징을 드러내는 일면이라 할 수 있음
- 이슬람 사법제도는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이슬람교도에 대해서만, 지리적으로는 해당 주 또는 연방지구 내에서만 관할권을 가짐
- 이슬람법은 연방 헌법에 따라 각 주에 입법권이 위임되어 있음. 대부분의 주에서 이슬람법 집행과 이슬람교의 행정에 관한 법, 샤리아 법원법, 가족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민사법 및 민사소송법, 증거법, 이슬람종교학교의 운영에 관한 법, 이슬람교 외의 종교의 포교에 관한 법 등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법들이 이슬람 법원에서 적용됨. 이와 더불어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 관보로 발행한 파트와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가짐

-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세계 할랄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제도는 코란에 근거하여 이슬람교도에게 “허용된” 것과 “양질의, 안전한, 청결한”이라는 의미인 토이반(Thoyyiban)이라는 개념을 접목시킨 인증으로, 종교적 규범 뿐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중점을 둔 제도임. 이 인증은 정부 기관인 이슬람개발국(JAKIM)에서 발행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는 국가 규격(Malaysia Standard, MS)으로 식품, 품질관리, 소비재, 의약품, 물류, 저장, 소매 등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공식 할랄 규격을 정하고 있음. MS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격이지만, 법이나 조례에 도입되어 법적 지위를 갖는 경우 강제규격으로 기능할 수 있음
- 할랄 식품에 관한 규격은 MS 1500으로, 식자재를 비롯하여 가공 과정, 저장,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된 할랄 인증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인증 기준이나 이슬람법 위배 시 만료 전에도 철회될 수 있음
- 할랄 의약품에 관한 규격은 2012년에 만들어진 MS 2424로, 2009년에 개정된 MS 1500과 유사하나 품질 관리 기준이 좀 더 엄격하고 추가적인 종교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
- 할랄 식품과 관련한 법으로는 교역품명시법이 대표적이며, 할랄 인증 획득 및 할랄 로고의 표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종래에도 건설업, 중공업, 자동차, 전자 산업 등으로 이슬람권 시장에 진출한 바 있으나, 최근의 한류 문화 열풍과 더불어 보다 다양한 식품, 미용, 문화 콘텐츠와

같은 품목의 진출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식품 부문에서는 타 국가나 다국적기업들에 비해 다소 진출이 늦어진 감이 있으나, 이슬람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슬람권 시장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의 파악과 더불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이슬람권 시장 진출에 힘쓴다면, 변화와 성장의 국면을 맞고 있는 이슬람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이슬람법 및 할랄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배경 지식 및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주제어 : 할랄, 할랄 인증, 샤리아, 이슬람법,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JAKIM), 이슬람권 시장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s

- Islam is the largest religion in the world, of which 160 million followers are distributed around the world. Together with growth and expansion of Islamic population and culture, Halal food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diet of muslims has become common. Halal, which means holy or permitted in Arabic, often denotes the kind of food which muslims are permitted to consume. However, in recent years, the concept of Halal has spread to cosmetics, medicine, apparel, finance, tourism, and logistics, and has become a cultural and commercial term. Halal market is a market of a high potential with a scale of \$2.1 trillion per year, which is growing with the muslim population.
- The understanding of halal and halal certification are inevitable to access Islamic market. Because there is no international standard on halal, there is a need to strategically approach the market by obtaining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and trusted halal certificate. For such a reason, Malaysian halal certificate issu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is generally accepted as a good market strategy.

-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aim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and knowledge necessary for penetrating Islamic market by looking into Islamic law, from which the concept of halal originates, along with Malaysia's legal system and halal certification scheme. By doing so, this research will derive implications and strategies to be employed for penetrating agro-fisheries, cosmetic, and medical markets in Islamic countries.

II. Main Contents

- Islamic Law, also known as Sharia, is the holy law of Islam which applies not only to religious matters but also to every day life of the muslim. The four sources of Islamic law are interpreted and appli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sects and schools within Islam.
- Halal means what is permitted to the muslims, and haram, which means what is prohibited to the muslims, is a concept opposite to halal. Halal and haram are under the sovereignty of Allah, the only God in Islam, and a muslim is supposed to be sufficient with halal as given by Allah.
- Pig, blood, meat slaughtered not according to Islamic law, and alcohol are the most well-known haram. Consumption or use of foods and products derived from these are prohibited.

- Halal and haram are decided based on the sources of Islamic law, such as Quran and Hadith. Howev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sources of law may vary depending on sect and region, and uncertainty frequently arises regarding whether a new technology or substance is halal or not. Thus, in modern Islamic law, the role of fatwa, the legal opinion of Islamic legal scholars, is significant.
- Islam is Malaysia's official religion, as stated in the official Federal Constitution of Malaysia, and ethnic Malay are Muslims by birth. However, due to Malaysia's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background, practice of religions other than Islam has been tolerated and freedom of religion is guaranteed by law. While Islamic culture and other cultures coexist, the government of Malaysia has been putting noticeable effort to maintain the Islamic identity of the nation, including in the area of legal system.
- Malaysia maintains a parallel legal system consisting of a secular legal system shaped during the British colonial period and a Sharia legal system which applies only to Muslims.
- Even within the secular legal system, there exists Punjulu's Courts over which the heads of Malay village have legal jurisdiction, and Native Courts in Sabah and Sarawak region in which the chief of the natives takes the role as the judge. This system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Malay legal system in which cultural diversity is respected and non-uniform application of law is accepted.

- According to the Federal Constitution, Islamic courts may practice personal jurisdiction over muslims only. Their jurisdiction is confined to the state or the territory in which they are geographically located.
- According to the Federal Constitution, legislation of Islamic law is delegated to each state. Most states have enacted laws on administration of Islamic law and the religion of Islam, laws on administration of Sharia courts, family laws, criminal codes and procedural laws, civil codes and procedural laws, evidence laws, laws on administration of Islamic religious schools, and laws on propagation of religions other than Islam. In addition to these laws, fatwas which state or federal governments issued on gazettes are also legally binding.
- Malaysia is leading the world halal industry under the active support of its government. Malaysian halal certification system is based on Quran, which includes the concept of halal, which means permitted, and the concept of thoyyiban, which means quality, safe, and clean; it is a system which not only embraces islamic religious obligations, but also emphasizes safety and quality. This certification is issued and supervised by JAKIM, which is a government agency.
- Malaysia has a number of officially drafted guidelines and standards called the Malaysian Standard (MS) which apply to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food production, quality control, consumer goods, medicine, logistics, storage, and retail. In principle, MS's are not legally binding. However, MS's adopted in a law, such as an act or an ordinance, are legally binding.

- MS on halal food is called MS 1500 Halal Food - Production, Preparation, Handling And Storage - General guidelines (Second revision), which provides an extensive guideline for preparation, processing, storage, distribution, and retail of halal foods. Certification based on this standard expires after a period as decided by relevant authorities, and maybe invalidated if the guideline or Islamic law is violated.
- MS on halal medicine was made in 2012 and issued as MS 2424. It is in large part similar to MS 1500, which was issued in 2009. However, MS 2424 includes stricter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and additional religious elements.
- Law that is relevant to halal food is the Trade Description Act, which provide for halal certification and mark.
- Korea has established a status in Islamic markets in the construction and heavy industry, and more recently, in automobile, electronics, and IT industries. Now is an appropriate time to explore and expand new industries with food, medical and beauty goods, and cultural contents, as the Korean media and culture are gaining popularity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Islamic countries. Korea is rather lagged behind in halal food industr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nsidering the great potential of Islamic markets, there is a need to actively seek strategies to penetrate these markets based on understanding of Islamic law, as well as of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Islamic market, with the government's systemic support.

III. Expected Effects

- This research may be utilized as a resource for future researches and studies on Islamic law and halal, of which understanding is still lacking in Korea.

- This research may provide background knowledge and reference material for formation of strategies for accessing Islamic markets.

➤ **Key Words : Halal, Halal Certificate, Sharia, Islamic Law, Malaysia, JAKIM, Islamic Marke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 2 장 이슬람법과 할랄	23
제 1 절 이슬람법 개관	23
제 2 절 할랄의 근거	28
1. 개 관	28
2. 코란에 근거한 할랄	29
3. 하디스에 근거한 할랄	33
4. 현대 이슬람법과 할랄	35
제 3 장 말레이시아의 사법체계와 할랄 제도	37
제 1 절 개 관	37
제 2 절 말레이시아의 이원적 사법제도	39
1. 일반 사법제도	39
2. 이슬람 사법제도와 이슬람법	45
제 3 절 말레이시아의 할랄 관련 법과 제도	52
1. 개 관	52

2. 할랄 관련 규격	54
3. 할랄 관련 법제	68
제 4 장 결 론	75
참 고 문 헌	8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슬람교는 세계 4대 종교 중 가장 규모가 큰 종교로, 전 세계 이슬람 인구는 약 16억 명, 즉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이슬람 인구는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에 집중해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북미에 이주·정착하여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하여 급격한 속도로 그 규모와 영역을 확장하였으며,²⁾ 이에 따라 이슬람교도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할랄(Halal) 식품이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

할랄이란 “신성한” 또는 “허용된”이라는 의미의 아랍어이며, 할랄 식품은 이슬람법에 따라 가공된 식품이다. 보편적으로 할랄 식품은 “이슬람이 금기하는 돼지고기 및 이슬람식으로 도축되지 않은 육류, 술 등의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제품”³⁾을 뜻한다. 할랄의 개념은 비단 식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화장품, 의약품, 의류와 같은 공산품을 비롯하여, 물류, 금융이나 관광 분야에까지 확산되어 있다. 미국의 한 컨설팅 기업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할랄 시장은 연 2조 1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슬람 인구와 함께 시장의 규모도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또한 음식료품

1) Pew Research Center, 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Projections for 2010-2030, January 27, 2011.

2) 2010년에 총 16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이슬람 인구 중 74%가 총 인구 대비 50% 이상이 이슬람교도인 국가에 거주하는 반면, 나머지 26%는 총 인구 대비 이슬람교도의 비율이 50% 이하인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d., at 155. 이슬람 인구와 문화권의 확산과 소비에 관하여 자세히는 이동훈, “베일에 가려진 16억 무슬림 시장 공략법”, SERI경영노트 제79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 참고.

3) Mariam Abdul Latif, Definition of Halal Terms and Malaysia Halal Standards and Industries, January 24, 2011, p.6.

4) 이유정, “‘할랄 인증’ 없으면 할랄 시장 ‘입장불가’” 한국경제신문 보도, 2011. 10.

의 경우 할랄 제품은 5천 6백억 달러의 규모로 세계 교역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⁵⁾

이와 같이 잠재력이 큰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할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1990년대부터 할랄 인증의 취득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현재 이슬람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아직 할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슬람권 시장과 이슬람 인구가 밀집해있는 지역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⁶⁾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진출을 꾀하고 있는 동남아권 국가들, 특히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는 아시아권 이슬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확대하고 있는 농수산물과 화장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이 국가들의 할랄 인증 기준과 절차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할랄 인증의 기준은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하고, 민간이나 종교 기관에서 인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⁷⁾ 여러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다민족·다문화적인 성향을 가진 동남아 이슬람국들이 세계 할랄 산업

10 (미국 컨설팅 기업 AT 커니의 조사 자료 인용); Liz Gooch, "Malaysia Seeks to Export Its Halal Credentials to China", New York Times, December 21, 2010 (published online at <http://www.nytimes.com/2010/12/22/business/global/22chinahalal.html?pagewanted=all&r=0>)

5) Global Business Policy Council, AT Kearney, A Glimpse into the Global Future, December 10, 2007, p.5. 이는 5천 4백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었던 2005년에 비하여 2백억 달러 이상 증가된 규모이다.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Market Information, available at [http://www.hdcglobal.com/publisher/bhi_market_information\(last visited July 13, 2012\)](http://www.hdcglobal.com/publisher/bhi_market_information(last visited July 13, 2012)).

6)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 군용 전투식량 생산업체는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지 출신의 이슬람인 비율이 많은 유엔군에 입찰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이유정, "‘할랄 인증’ 없으면 할랄 시장 ‘입장불가’" 한국경제신문 보도, 2011. 10. 10 참조.

7) See French Association of Muslim Consumers, Survey on the Halal Certification Agencies - Year 2009, AIDS COM, 2009.

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말레이시아는 세계 할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관련 교육, R&D, 표준화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UAE 등이 뒤를 잇고 있다.⁸⁾

할랄 국제 표준을 이끌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할랄 산업을 정부의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 기관인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국(JAKIM)이 수립한 규격에 의거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로고는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⁹⁾ 따라서 동남아, 중동, 나아가 유럽의 이슬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주로 대부분의 이슬람권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시장 진출 대상국으로서도 매력적인데, 말레이시아에 있어 우리나라는 화장품 부문 주요 수입국 5위, 식료품 부문 14위, 의약품 부문 1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화장품, 식료품, 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¹⁰⁾ KOTRA에서는 화장품, 식료품, 의약품을 對말레이시아 10대 유망 수출 품목에 각각 1위, 2위, 7위로 제시하고 있으며,¹¹⁾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농식품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어,¹²⁾ 이러한 품목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화장품, 의약품의 할랄 인증을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8)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WHy HDC?", available at http://www.hdcglobal.com/publisher/bhi_why_hdc (last visited July 13, 2012); 공이철, 위의 글, 3면 참조.

9)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Halal Certification, <http://www.hdcglobal.com/publisher/certification> (last visited July 13, 2012).

10) KOTRA, 아시아·대양주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 9. 15, 120-121면, 126면 참조.

11) Id.

12) 농수산물유통공사, "할랄식품 시장진출로 거대 무슬림시장 공략", aT Focus Vol. 02, 2011. 02, 18면.

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할랄 인증 기준에 관한 연구에 있어 말레이시아 할랄 규격 (Malaysia Halal Standard)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과 더불어 전체 인구의 88% 가량이 이슬람교도이며, 전 세계 이슬람교도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는 단일 시장 기준 규모 세계 1위의 인도네시아 역시 할랄 시장 공략을 위한 관문으로 여겨지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국에서 발행하는 할랄 식품 인증을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¹³⁾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취득을 통해 이 두 시장에 동시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의 값어치가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할랄 개념의 근본이 되는 이슬람법(Sharia, 샤리아)과 아울러 말레이시아의 사법제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할랄 인증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슬람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할랄 인증에 대하여 조사하되, 특히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가진, 말레이시아 정부 산하 이슬람개발국에서 수립한 말레이시아 할랄 기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할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과 화장품, 의약품 등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할랄의 개념은 이슬람법에서 근거하는 것으로, 이의 역사적·문화적·법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할랄 개념의 근본이 되는

13) Majelis Ulama Indonesia, List of Approved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ies, available at <http://www.halalmui.org/images/stories/pdf/LSH/LSHLN.pdf> (last visited October 1, 2012).

이슬람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할랄 개념의 근본이 되는 이슬람법과 말레이시아의 사법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말레이시아의 할랄 관련 규격과 법제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밝히고, 제2장에서는 이슬람법(Sharia, 샤리아)과 할랄의 개념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권 시장 진출의 첫 관문으로 볼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사법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국에서 정하는 말레이시아 할랄 식품 인증 규격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기준과 관련 법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사법제도에 대한 배경과 할랄 인증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¹⁴⁾로부터 받은 자문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14) 국내전문가 박규환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슬람법연구센터장)와 국외전문가 Abu Baker Munir, Professor of Law 및 Siti Hajar Hohd Yasin, Associate Professor at th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Malaya의 전문가 자문 의견이 반영되었다.

제 2 장 이슬람법과 할랄

제 1 절 이슬람법 개관

이슬람법은 “샤리아”¹⁵⁾라는 아랍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샤리아”의 어의적 의미는 “마실 수 있는 물의 원천지”라는 뜻과 “올바른 길 또는 똑바른 길” 혹은 “물 마시는 곳으로 이끄는 길”이다.¹⁶⁾ 역사적으로는 AD 8~9세기에 걸쳐 체계화된 이슬람의 성법(聖法)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슬람교도 “개개인의 종교적 생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현세의 생활까지도 구체적으로 규제하여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¹⁷⁾

샤리아를 단순히 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샤리아의 범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 하고 제한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¹⁸⁾ 샤리아는 주로 결

15) “샤리아”의 영문 표기는 지역과 학자에 따라 “Shariah”, “Shari’a”, “Syariah”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통일되어 있지 않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Syariah”로 표기된다. 또한, “샤리아”를 “Syariah Law”, 즉 “샤리아법”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샤리아”라는 단어에 율법이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번역 상의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Shariah” 또는 “샤리아”로 표기하겠다.

16) 박규환,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Halal) 인증 제도 연구 자문서, 2012. 9. 4, 1면.

17) 홍성민, “이슬람법(Shariah)에 관한 연구”, 아프리카연구 창간호, 명지대학교 아프리카센터(1999)에 게재된 글의 인터넷 재게재 http://hopia.net/hong/file/mid02_Islamlaw.htm (2012. 9. 20 접속). 샤리아의 내용은 “정결, 참회, 예배, 회사, 금식, 순례, 장례 등에 관한 ‘의례적 규범’, 즉 이바다트(ibadat)에서부터 혼례, 이혼, 부모자식간의 관계, 상속, 노예, 자유인, 계약, 매매, 서언(誓言), 증언, 와크프(waqf), 소송, 재판, 비무슬림의 권리 및 의무, 범죄, 형벌, 전쟁 등 공사(公私) 양법(兩法)에 걸친 ‘법적 규범’도 포함한다.” Id.

18)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Radical Islam’s Rules, p.1 (Paul Marshall ed., 2005); Lu’ayy Minwer Al-Rimawi, “Relevance of Sharia as a legislative source in a modern Arab legal context: a brief constitutional synopsis with emphasis on selected commercial aspects”, 32(2) Company Lawyer 57, 2011, p.57; 한동훈 외 2인,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9, 20면 참조. 샤리아는 ‘법’인 동시에 ‘윤리’이기도 하며,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 ‘실정법’인 동시에 ‘도덕률’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

혼 및 가족관계, 경제, 형벌 등 세속적인 사항과 동시에 기도, 성지순례, 금식(라마단)과 같은 신앙적·도덕적 주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샤리아는 하나의 통일된 법전으로 이루어져있지 않으며, 종파 및 학파와 지역에 따라 달리 해석·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슬람권을 아우르는 법체계나 모든 이슬람교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절차도 존재하기 어렵다. 특히, 현대 이슬람교도의 분포 양상을 고려할 때, 국교를 이슬람교로 정하고 있거나 대다수의 국민이 이슬람교도인 국가와 이슬람교도가 소수인 세속 국가 간에는 생활 양식과 여건, 종교 생활을 위한 제도적·사회적 지원의 여부, 종교 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관습 등에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슬람교도들에게 동일한 기준과 형태로 이슬람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¹⁹⁾

이슬람교는 크게 여덟 가지의 종파로 나뉘는데,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10억명 이상의 수니파(Sunnis)와 1억명 이상의 시아파(Shias)이고, 그 외에도 수피파(Sufis), 와하비파(Wahhabis), 이스마일파(Ismalis), 알레비파(Alevis), 아흐마디아파(Ahmaddiyas), 그리고 알라위파(Alawites) 등이 존재한다. 종파 간에는 창시자인 모하메드 이후 지도자의 정통성, 코란의 해석, 이슬람교 의식에 대한 태도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단으로 간주되는 소수 종파도 포함된다.²⁰⁾

19) 특히 “할랄 음식의 개념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은 규율에 대한 지식정도와 함께 음식 소비자가 처한 자연적, 역사 및 사회적 환경 안에서 각기 형태가 달라지거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송도영, “한국 내 이슬람(할랄) 음식의 소비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 한국중동학회논문총 제32권 제1호, 한국중동학회, 2011., 225면.

20) 예를 들어, 남아시아에서는 77%,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50%, 동유럽과 남유럽에서는 32%, 동남아시아에서는 24%,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18%만이 수피파를 이슬람교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아흐마디아파를 이슬람교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비교적 많다. Pew Research Center, The World's Muslims: Unity and Diversity, Aug 9, 2012, p.23 참고. 각 종파 간의 자세한 차이점은 The Economist,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주류 종파로 10억 명 이상의 교도가 속한 수니파는 이슬람교 창시자인 모하메드의 언행을 따르며, 코란의 해석과 규범을 중시한다. 수니파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샤리아의 법원(法原)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Quran), 모하메드의 언행록인 하디스(Hadith)에 기록된 관습인 순나(Sunna),²¹⁾ 공동체의 일반적인 합의인 이즈마(Ijma), 그리고 유추를 통한 추론법인 키야스(qiyas)로 순차적으로 구성되고, 샤리아학으로는 모하메드의 언행록인 하디스(Hadith), 코란의 주석학인 타프시르(tafsir), 신학(神學)인 칼람(kalam), 그리고 법학인 피크(fiqh)을 꼽는다.²²⁾

수니파 내에도 다양한 학파가 있는데, 종파 간에 분쟁이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학파 간에는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공존하고 있다.²³⁾ 수니파의 대표적인 종파로는 하나피(Hanafi)파, 말리키(Maliki)파, 샤피(Shafi)파, 그리고 한발리(Hanbali)파가 있다.

주요 학파들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공통 법원(法原) 이외에도 이스티흐산(Istihsan), 무언의 복리(al-masalih al-mursalah), 관습(urf), 이스티스하브(istishab), 전승된 이슬람 이전의 법, 그리고 전승된 사하바들의 법적 견해 등을 법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석한다.²⁴⁾

“The sword and the word” (published online, May 12, 2012), available at <http://www.economist.com/node/21554513> (last visited on August 18, 2012) 참고.

21) 순나와 하디스의 혼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순나는 모하메드 삶 자체, 즉 생전의 말과 행동을 칭하는 반면, 하디스는 모하메드의 삶을 옆에서 관찰했던 그의 제자들이 후대에 모하메드의 언행에 대해 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하디스에는 모하메드의 언행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차이, 기억에 의한 오류 등이 존재하며, 신빙성이 높은 순서부터 Sahih, Hasan, Da'if, Mawdu' 등으로 나뉜다. Amin Ahsan Islahi, Difference Between Haddith and Sunnah, available at <http://www.renaissance.com.pk/jafelif986.html#1> (last visited October 1, 2012).

22) 박규환, 앞의 글 1면.

23) 한동훈 외 2인, 앞의 글, 22면.

24) 한동훈 외 2인, 앞의 글, 55-70면.

<표-1 : 이슬람교 수니파의 주요 학파 별 특징과 분포지역>

학 파	특 징	주요 분포 지역
하나피 (Hanafi)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하여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합리성을 추구하는 학파로, 타 학파에 비해 개방적이고 유연함	터키, 시리아, 요르단, 중국, 중앙아시아, 북인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하 이집트(카이로와 델타지역)
말리키 (Maliki)	하나피 학파에 대항하여 창시되었으며 코란을 비롯하여 하디스에 주로 의존하여 법이론을 발전시켰고 순나의 범위를 넓게 받아들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스페인, 상 이집트, 수단, UAE, 쿠웨이트, 바레인
샤피 (Shafi)	하나피와 말리키 학파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여 고전적 이슬람법 이론의 체계를 정리·통합하고 과학화하여 이슬람법인 피크(fiqh)의 기초를 다짐	팔레스타인, 레바논, 예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동아프리카, 남부 이집트, 인도양 연안
한발리 (Hanbali)	하나피 학파와는 달리 이성을 배격하고 샤리아 법원(法原)은 코란과 하디스로 한정해야 한다는 엄격한 법체계를 주장함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라크, 시리아

출처: 한동훈 외 2인,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9, 22-23면 요약; 김용운, “말레이시아 이슬람법의 파트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 부산대학교, 2012. 5, 367-378면 요약.

<표-2 : 이슬람법 비공통 법원의 종류와 설명>

법 원	설 명
이스티흐산 (Istihsan)	- “좋음” 또는 “더 나음”의 뜻으로 기존의 가장 유력한 논리로 판결한 것을 포기하고 다른 판단을 좋게 보는 것 - 원전, 합의, 불가피함, 숨은 유추, 관습, 복리 등에 의거하여 기존의 판례를 포기함
이스티스라흐 (Istislah)	- 무언의 복리(al-masalih al-mursalah)라고도 함 - 기존에 규범이 없는 영역에 있어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해를 제거하며 불편을 제거하는 규범을 정립하며, 시대에 따라 가변적임
관습(urf)	- 샤리아에 모순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고 습관으로 된 말이나 행위 혹은 금지된 것이나 관행적으로 행하는 것
이스티스하브 (istishab)	- 상태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내린 판결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 - 무효 또는 무죄의 원칙 포함
전승된 이슬람 이전의 법	- 모하메드 이전의 공동체에 대한 규범으로, 코란과 순나에 기술되어 있는 것만 법원으로 인정함
전승된 사하바들의 법적 견해	- 사하바란 모하메드와 같은 세대의 교우를 지칭하며, 모하메드 사후 법적 견해를 발표하였음

출처: 한동훈 외 2인,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9, 55-70면 요약.

이와 같이, 이슬람법은 종파와 학파에 따라 각각 다른 교리와 법원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같은 주제에 대하여 다른 해석이나 결론을 도출해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같은 학파라 할지라도 지역적·사회적 여건과 관습에 따라 다른 형태로 이슬람법을 적용하

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할랄에 관하여서도 지역과 학파에 따라 접근과 해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할랄의 근거

1. 개 관

이슬람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코란, 하디스, 이즈마와 키야스를 포함한다. 이 중 하나의 법원에서라도 언급된 음식은 이슬람교도에게 “허용된”이라는 의미의 할랄(Halal) 또는 “금지된”이라는 의미의 하람(Haram)으로 적용되며, 할랄과 하람 사이의 “의심스러운 것”을 뜻하는 슈바(Shubha)라는 개념이 있다.²⁵⁾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종파와 학파 및 지역 간에 다소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금지된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 알라가 창조한 것은 할랄이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원칙이다.

할람과 하람을 정하는 것은 알라만이 갖는 권한으로, 인간이 함부로 정할 수 없으며, 이슬람교도는 할람과 하람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이슬람교도에게 있어 할랄 만으로 필요충분하며, 하람은 불필요하다. 하람을 할랄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의심스러운 것(슈바)는 피해야한다.²⁶⁾

주요 하람 식품으로는 돼지고기, 개, 피, 올바른 도살 방법에 의하지 않고 죽은 동물의 고기, 카말(술 등의 알콜성 또는 알콜을 포함한 음식료 및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 등이 있는데, 이 식품들이 금지된 기본적인 이유는 부정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하람에서 유래하거나 파생된 것들도 모두 하람이다. 예를 들어 하람인 돼지고기로부터 유래하는 라드(lard), 돼지껍질, 피, 뼈, 털 등도 금지의

25) 財団法人食品産業センター「マレーシアハラール制度の実務」2010. 3., p2.

26) Id. at p.3.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돼지의 기름으로 제조하는 유산제, 조미료와 돼지껍질을 원료로 하는 젤라틴, 콜라겐, 발포제, 안정제 등을 비롯하여 돼지의 내장에서 추출하는 효소, 돼지의 장을 사용한 소시지 껍질, 돼지의 뼈에서 유래하여 설탕의 정제 등에 사용되는 활성탄, 베이컨 등을 들 수 있다.²⁷⁾

<표-3 : 이슬람교에서 주로 금지하는 식품과 금지 이유>

주로 금지하는 식품	금지 이유
돼 지	병원성 기생충을 인간에게 옮기는 매개생물임
피	동물의 피에는 유해세균, 신진대사물, 효소 등이 포함되어 있음
올바른 도살 방법(할랄 도축법)에 의하지 않고 죽은 동물의 고기	죽은 동물의 고기를 기피하는 데에서 유래하며, 죽은 동물은 부패과정에서 인간에게 유해한 화학물질을 형성함
카말(주류)	알콜류는 신경계에 해를 입히고 인간의 판단력에 영향을 주어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가정을 파괴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자료: 財団法人食品産業センター「マレーシアハラール制度の実務」2010. 3., p.2.

2. 코란에 근거한 할랄

음식의 섭취와 관련하여 샤리아의 제1차 법원(法原)인 코란에서 음식은 인간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²⁸⁾

27) Id. at p.3.

28) 박규환, 앞의 글, 1면 (Abdul-Azeem Badawi, the concise presentation of the fiqh of

<표-4 : 음식의 섭취 일반과 관련된 코란 본문>

코란	본문
제2장 168절 ²⁹⁾	사람들이여 지상에 있는 허용된 좋은 것을 먹되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실로 너희들의 반역자라.
제7장 32절	일러 가로되 종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깨끗한 이 양식을 누가 금기하느냐.

이와 같이 코란 및 하디스에서 금지한 음식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음식이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알라가 금지한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알라에게 대적하는 거짓으로, 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음식의 허용 또는 금지 여부는 알라 고유의 권한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표-5 : 음식의 허용 및 금지에 대한 알라의 권한을 나타내는 코란 본문>

코란	본문
제10장 59절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창조한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여 보았느냐. 너희는 그 중의 일부를 금기하고 일부는 허락하였더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느냐.

the sunnah and the noble book, International Islamic Publishing House, 2ed. 2007, p.535 재인용).

29) 이하 편의를 위하여 코란의 “sura”를 장으로 번역하였다. 코란은 총 1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고유의 제목이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생략하겠다.

코 란	본 문
제2장 172절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u>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양식 중 좋은 것을 먹되</u>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분만을 경배하라.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슬람법에서는 금지된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 알라가 창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할랄이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코란은 섭취가 허용된 음식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순례 중이 아닐 때의 사냥물, 동물이 사냥해온 것, 바다에서 나는 것, 가축 등이 그 예이다.

나아가, 불가피하게 또는 알지 못한 채 섭취한 음식에 대한 예외와 “성서를 받은 자”, 즉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먹는 음식이 섭취 허용되고 있다. 특히 북아메리카, 유럽 등지의 비교적 자유분방한 이슬람교도들은 “성서를 받은 자”의 음식을 허용하는 문구를 전제로 비교적 관대한 식생활을 하거나 유대교의 구약 율법에 근거한 코셔(Kosher) 식품을 할랄 식품의 대체로 용납하는 경우도 잦다.

<표-6 : 코란에 나타난 할랄의 예>

코 란	본 문
제5장 2절	(전략) ...너희가 <u>순례복을 벗을 때에는 사냥이 허용되</u> 니라... (하락)
제5장 4절	허락된 것이 무엇이나 그대에게 묻거든 <u>좋은 것들</u> 이라 말하라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u>육식 동물이</u> 너희를 위해 사냥하여 온 것도 허락된 것이거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라... (하락)

코 란	본 문
제5정 5절	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것들이 허락되었으니 <u>성서를 받은 자들의 음식이 허락되었고 또한 너희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락되었으며...</u> (하락)
제5장 96절	그러나 <u>바다의 사냥과 그 음식은 허락되었나니 이는 너희와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며...</u> (하락)
제6장 145절	일러 가로되 내가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것 가운데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치 아니했노라. 그러나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제6장 118-1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고기를 먹되 <u>그 분의 이름으로 도살된 것을 먹으라.</u> ³⁰⁾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된 것을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뇨. 그분께서는 금지된 것과 불가항력의 경우를 너희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노라... (하락)
제6장 143절	가축 가운데에는 짐을 실을 가축이 있고 <u>고기로 사용할 가축이 있노라</u>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양식으로 주셨으되 사탄의 발걸음을 따르지 말라 했노라 그는 실로 너희에의 적이니라.

반면, 코란에 나타난 금지된 음식, 즉 하람의 예는 다음과 같다.

30) 이에서 유래한 할랄 도축의 요건 중 하나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요건이 있다. 이 요건을 가리켜 흔히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뜻의 ‘비스밀라’(Bismillah)라고 한다. 제9장을 제외하고 코란의 모든 장은 “비스밀라 히 아르라흐 만 아르라힘” 즉,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로 시작하며, 비스밀라는 이슬람교도의 축복의 인사 또는 식사 전의 인사 등으로도 사용된다.

<표-7 : 코란에 나타난 하람의 예>

코란	본문
제2장 173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거늘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제5장 1절 제5장 96절	(전략) ...순례 상태로 성역에 있을 때 사냥은 금기라. 육지의 사냥은 너희에게 금하니 이때는 너희가 순례 중일 때이라.
제5장 3절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 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은 고기가 아닌 것 목 졸라 죽인 것과 때려서 잡은 것과 떨어져서 죽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 다른 야생이 일부를 먹어 버린 나머지와 우상에 제물로 바쳤던 것과 화살에 점성을 걸고 잡은 것이니거늘 이것들은 불결한 것이라... (이하 생략)
제6장 121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는 먹지 말라. 그것은 죄악이니라.

3. 하디스에 근거한 할랄

하디스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전인 코란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샤리아의 제2법원(法源)인 순나, 즉 모하메드의 언행을 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언행이 전승된 것을 후대에 편찬하였기에, 집필자에 따라 내용과 권위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부 하디스에 할랄 또는 하람 식품과 관련한 내용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일부를 잘라낸 고기는 썩어가는 고기로 여기지만, 이에 대한 예외를 모하메드가 이야기하였다는 기록이 하디스에 있다. 썩어가는 고기에 대한 예외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생선이고 다른 하나는 메뚜기이며, 피 흐르는 고기도 금지되어 있는데 쓸개와 간은 예외로 본다고 전해진다.³¹⁾

당나귀 고기의 금지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다. Anas Ibn Malik는 모하메드가 당나귀 고기의 섭취를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이들은 당나귀 고기는 부패가 빠르고 불결하기 때문에 알라와 모하메드가 금지했다고 주장한다.³²⁾

또한 송곳니를 가진 사냥감과 발톱을 가진 조류의 섭취에 대하여 Ibn Abbas와 Abu Tha'laba는 모하메드가 모든 송곳니 소유의 짐승과 발톱을 가진 조류의 섭취를 금지했다고 한다.³³⁾ 사자, 호랑이, 늑대, 치타, 독수리, 매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란에서 육식동물이 사냥해온 것은 허락된다는 구절이 있으나, 'Adi b. Hatim은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한 뒤 내보낸 사냥개가 사냥해온 동물은 비록 사냥개가 그 동물을 죽였더라도 할랄이지만, 기도한 뒤 내보낸 개가 아닌 다른 개가 사냥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모하메드의 말을 전한다.³⁴⁾

31) 박규환, 앞의 글, 3면 (Shaykh al- Albani, Saheeh Sunan Ibn Majah, no. 2606: Abdul-Azeem Badawi, The Concise Presentation of the FIQH of the Sunnah and the Noble Book, International Islamic Publishing House, 2Ed. 2007, pp. 538-539 인용).

32) 박규환, 앞의 글, 4면 (Abdul-Azeem Badawi, The Concise Presentation of the FIQH of the Sunnah and the Noble Book, International Islamic Publishing House, 2Ed. 2007, p.539 인용).

33) 박규환, 앞의 글, 4면 (Shaykh al-Albani, Mukhtasar Saheeh Muslim, no. 1332.: Abdul-Azeem Badawi, The Concise Presentation of the FIQH of the Sunnah and the Noble Book, International Islamic Publishing House, 2Ed. 2007, pp.539 인용); Sahih Bukhari, Volume 7, Book 67, Number 438 (Islam House, 1Ed. 2009, trans. by M. Muhsin Khan).

34) Abul Husain Muslim bin al-Hajjaj al-Nisapuri, Sahih Muslim, Book 21, Chapter 1, Number 4732 (Huda Info Solutions, trans. by Abdul Hamid Siddiqui), available at <http://>

4. 현대 이슬람법과 할랄

앞서 언급하였듯이 샤리아는 모든 이슬람권의 이슬람교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보다는 지역과 학파에 따라 달리 해석·적용되는 경우가 잦으며, 이는 할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다.

불결한 방법으로 길러진 짐승의 우유를 먹는 것과 이에 대한 예외 규정, 금지된 음식으로 완전히 합의되었지만 예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입장과 그 허용 조건, 이슬람식 도축의 근거규범과 방법, 사냥의 도구와 방법, 개와 물에 빠진 사냥감의 처리, 사냥된 짐승을 찾지 못한 경우의 처리, 종교의식에 사용된 짐승의 처리 등과 같이 법원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역 또는 학파의 입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³⁵⁾

아울러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GMO)과 같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음식이나 효소, 비타민 등과 같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산·섭취되는 식품들에 대하여서도 각 지역 및 학파의 입장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 파악을 위한 수단으로 파트와(Fatwa), 즉 이슬람법학자인 무프티(Mufti)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이슬람법에 대한 법적 견해³⁶⁾가 있다. 파트와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으나, 이슬람교도들에게는 파트와를 따를 종교적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입법화 또는 정책화되어 사회적·법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

www.hudainfo.com/Muslim/MuslimIndex.asp (last visited October 1, 2012).

35) 박규환, 앞의 글, 4면. 예를 들어, 대부분의 종파가 게, 새우, 가재 등의 갑각류를 할랄로 정하고 있지만, 하나피파에서는 게는 하람, 새우는 할랄로 정하고 있고, 샤피파는 육지에 서식하는 게를 하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외 식용 동물의 할랄 여부에 대한 종파 별 입장의 예는 The Halal Journal, “Halal and Haram in the Animal Kingdom”, May/June 2009, pp.32-34 참고.

36) “Fatwa”는 “AFTA-ifta’an”에서 유래한 단어로, 법의 의도 또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e-Fatwa Portal Rasmi Fatwa Malaysia, “What is Fatwa?,” available at <http://www.e-fatwa.gov.my/apa-itu-fatwa> (last visited September 14, 2012).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파트와위원회(National Fatwa Committee)³⁷⁾와 주(州)마다 존재하는 지역파트와위원회(Regional Fatwa Committee)가 이슬람법의 해석을 전담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싱가포르에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이슬람교위원회(Islamic Religious Council of Singapore) 소속 파트와위원회(Fatwa Committee)에서 다섯 명 내외의 무프티가 파트와를 발행하고 있으며,³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교의 주요 종파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파트와위원회(Fatwa Commission Assembly of Indonesian Council of Ulama)에서 파트와를 발행한다.³⁹⁾

37) 정식 명칭은 Fatwa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for Islamic Religious Affairs Malaysia이다. Id.

38) Office of the Mufti, Majlis Ugma Islam Singapura, “Fatwa in Singapore”, available at <http://www.muis.gov.sg/cms/oomweb/fatwa.aspx> (last visited September 14, 2012).

39) See Majelis Ulama Indonesia, “The Importance of Halal”, available at http://www.halalmui.org/newMUI/index.php/main/go_to_section/14/10/page/2 (last visited September 14, 2012); see also, Sugiri Syarief, Indonesian Council of Ulama’s Fatwa on Population, Reproductive Health and Family Planning, National Family Planning Coordinating Board, 2010.

제 3 장 말레이시아의 사법체계와 할랄 제도

제 1 절 개 관

말레이시아는 헌법에서 이슬람교를 공식 국교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⁴⁰⁾ 타종교의 신봉과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타종교인 간의 선교·포교를 허용하는 특이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종교·다인종 국가이다.⁴¹⁾ 2010년 인구 조사 당시 약 2,830만 명의 인구 중 91.8%가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시민이었고, 나머지 8.2%는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시민의 민족 별 구성은 말레이인이 67.4%, 중국계가 24.6%, 인도계가 7.3%, 기타 민족이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종교적으로는 과반수가 이슬람교도이고, 그 외 불교, 기독교, 힌두교 등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⁴³⁾

연방헌법 해설규정에 따르면 말레이인은 태생적으로 모두 이슬람교도로 분류되므로 말레이인의 비율은 이슬람교도의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⁴⁴⁾

40)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3조(1): 이슬람은 연방에 대한 종교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연방의 어느 부분에서라도 행해질 수 있다. (원문은 영어와 말레이시아어로 되어있으며, 번역은 김용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사법제도에 대한 연구, 법조 659호 (2011. 8) 184면 참조.)

41)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11조(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고 실천할 권리가 있으며, (4)항을 전제로 자신의 종교를 전파할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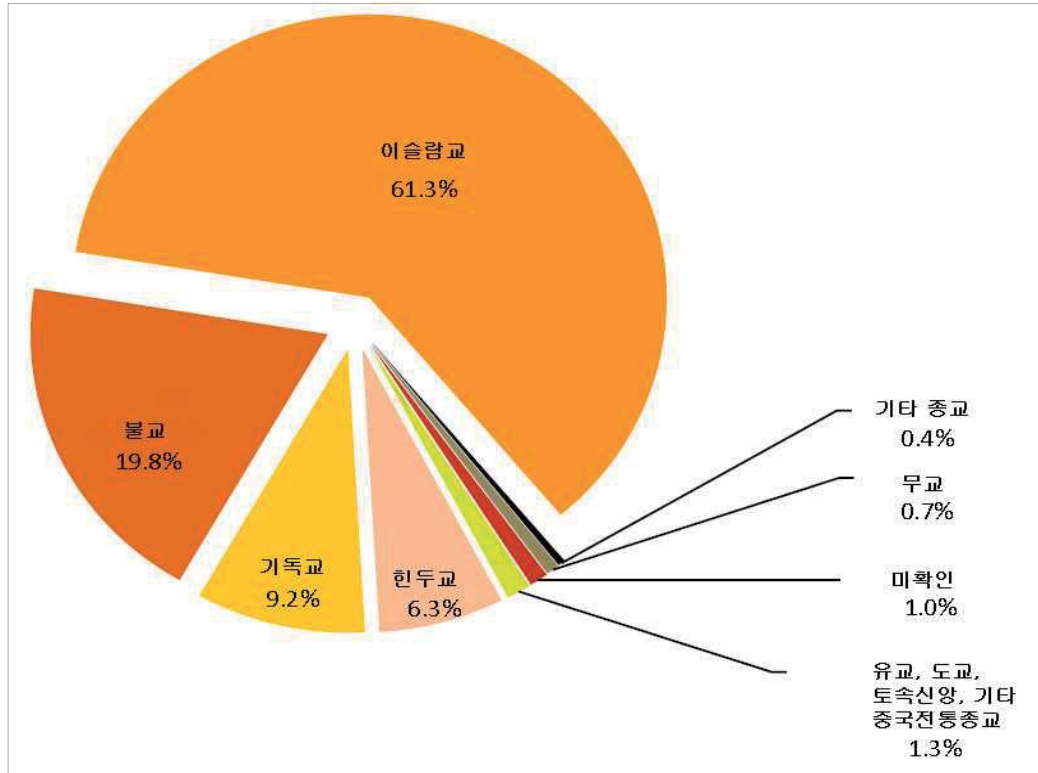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11조(4): 주 법 또는 연방법은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하는 타 종교의 교리 또는 신앙의 전파를 통제·제한할 수 있다.

42)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Population Distribution and Bas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011. 6. 28 (online publication available at http://www.statistics.gov.my/portal/download_Population/files/census2010/Taburan_Penduduk_dan_Ciri-ciri_Asas_Demografi.pdf)

43) Id.

44) 연방헌법 제160조 해설(Tafsiran)에 의하면 "'말레이인'은 이슬람종교를 신봉하고 말레이어를 상용하며 말라유 관습을 따르는 자"이다. 말레이어와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sia)의 차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김용운, 앞의 글, 180면 참조.

<그림1 : 2010년 기준 종교에 따른 말레이시아 인구분포도>



출처: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Population Distribution and Bas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011. 6. 28, p.9.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교와 샤리아를 도입한 시기는 15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동지역과 활발히 교류하였던 멜라카(Melaka)의 지배자 파라메스와라(Parameswara)가 1414년 파사이의 이슬람교도 공주와 혼인관계를 계기로 이슬람을 국교로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이름을 술탄 이스칸다르샤(Sultan Iskandar Shah, 1400~1424 재임)로 개명하고 최초의 멜라유 술탄국(Kesultanan Melay)을 수립하였다. 술탄 이스칸다르샤가 성문이슬람법인 멜라까법(Undang-Undang Kanun Melaka)을 제정한 이래 말레이반도는 샤리아와 힌두교에서 유래한 전통관습법(Malay Adat)을 기반으로 이슬람법이 지배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힌

두교에 근거한 왕위제도가 폐지되고 이슬람법에 근거한 술탄제도가 시작되었다.⁴⁵⁾ 술탄은 이슬람교의 유일신인 알라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며, 알라의 법, 즉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멀라카 왕국은 16세기 초 포르투갈에 패함으로 말레이반도의 주도권을 상실하였고, 이후 영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 영국식 사법제도가 도입되었다.⁴⁶⁾ 특히 1900년대 초반에는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재판에 대한 상소를 담당하던 술탄의 권한을 없애고 영국 런던의 추밀원으로 상소하도록 하였다. 1963년 말레이연방 수립 이후에는 연방 법원이 항소법원의 역할을 맡았으나 추밀원 상소제도가 유지되었고, 1985년에 이르러 말레이시아 대법원이 설립된 이후에야 그 제도가 폐지되었다.⁴⁷⁾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는 영국식 보통법이 범사회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되었고, 이슬람법은 이슬람교도에게만 적용되는 종교적 규범으로 축소되었다.

제 2 절 말레이시아의 이원적 사법제도

현재 말레이시아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 사법 체계와 국민의 과반수에 해당되는 이슬람교도에게만 적용되는 샤리아 사법 체계를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일반 사법제도

말레이시아의 일반 사법체계에서 법원은 상급법원(Superior Courts)과 그 외의 하급법원(Inferior Courts)으로 나뉜다.⁴⁸⁾ 상위에서 하위 순으로

45) 김용운, 앞의 글, 181면; Abu Bakar Munir, Expert advice for the research on Islamic law and Halal certification of Malaysia (2012. 9. 3), p.2.

46) Abu Bakar Munir, Expert advice for the research on Islamic law and Halal certification of Malaysia (2012. 9. 3), p.2

47) 박중현, “말레이시아의 사법체계”, 최신외국법제정보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75면.

48) 류창호, “말레이시아의 사법제도와 소송외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 제7호,

나열하자면, 상급법원으로는 연방법원(Federal Court),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고등법원(High Court) 순이고 하급법원으로는 민·형사 법원(Sessions Court),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이 있다. 상급법원은 판례법을 형성할 수 있으나, 하급법원의 사건은 판례법에 포함되지 않는다.⁴⁹⁾

(1) 상급법원

1) 연방법원

연방법원(Federal Court, Mahkamah Persekutuan Malaysia)는 1957년 말라야의 독립 과정 중 최고법원으로 설립되었고, 1994년에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으로 개칭되었다, 현재도 말레이시아 최상위의 법원이다.

연방법원은 (1) 일반적으로 항소법원에서 상소된 모든 민사·형사 사건, (2) 형사사건 중 고등법원이 원심인 사건들에 한하여 최종심, (3) 연방문제에 대한 사건, (4) 다른 법원으로부터 위탁 받은 헌법 문제에 관한 사건, (5) 연방 의회나 주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부당한지 여부 심사, (6) 주들 사이의 분쟁이나 연방과 주 사이의 분쟁 심사 등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이 외에도 국왕이 헌법조항에 관하여 현재의 헌법문제나 앞으로 일어날 것이 분명한 헌법문제에 대하여 연방법원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⁵⁰⁾

연방법원의 판사진은 수석재판관(Chief Justice of the Federal Court)이라 불리는 연방법원장(President of the Court), 항소법원장(President of the Court of Appeal)과 2인의 고등법원장(Chief Judges of the High Courts) 및 기타 재판관 11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내각수상의 조언과 최고통치자회의(Conference of Rulers)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왕이 임명한다.⁵¹⁾

한국법제연구원, 2007, 41면.

49) Id.

50)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128조와 제130조; 박종현, 앞의 글, 76면.

51)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122조; 박종현, 앞의 글, 76면.

2) 항소법원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Mahkamah Rayuan)은 연방법원 바로 하위에 위치해 있는 말레이시아 두 번째 상급법원으로, 1985년부터 상소과정에 있어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에 대한 항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진행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다. 항소법원은 민사·형사 사건에 있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관할하며, 하급법원이 원심인 사건들의 최종심을 담당한다.⁵²⁾

항소법원에는 항소법원장(President of the Court of Appeal)이 있으며, 국왕의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32인의 다른 판사들을 두는데, 이들은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내각 수상의 조언과 통치자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국왕이 임명한다.⁵³⁾

3)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상급법원 중 연방법원과 항소법원 하위에 위치하는 법원으로, 헌법 제정 당시에는 말라야 고등법원(the High Court in Malaya)과 사바 및 사라왁 주 고등법원(the High Court in Sabah and Sarawak) 두 개의 고등법원이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확장되어 13개 주에 22개의 지원을 두고 있다.⁵⁴⁾

두 개의 고등법원은 일반적으로 하급법원들에 대한 감시자, 지휘자, 교정자의 역할을 하며, 하급법원의 민사·형사 사건의 상소를 담당한다. 고등법원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있어 관할권의 제한이 없으며, 사건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⁵⁵⁾ 단, 이슬람법에 대해서는 주 정부 관할인 샤리아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52) 1964년 말레이시아 법원법(Courts of Judicature Act 1964); 박종현, 앞의 글, 78면.

53)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122조B(1); 박종현, 앞의 글, 78면.

54) 박종현, 앞의 글, 79면.

55) Id.; 1964년 말레이시아 법원법(Courts of Judicature Act 1964).

각 고등법원에는 법원장과 4인 이상의 판사가 있으며, 판사의 수는 국왕의 별도 명령이 있지 않는 한 말라야 고등법원은 60인, 사바 및 사라와크 고등법원은 13인을 초과할 수 없다.⁵⁶⁾ 판사의 임명은 연방법원이나 항소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왕이 수상의 조언과 최고통치자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데, 수상은 조언 전에 연방법원장, 판사 임명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고등법원장, 그리고 사바 및 사라와크 고등법원장 임명 시에는 사바 및 사라와크 주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⁵⁷⁾ 고등법원에서는 단독판사 혹은 사법관(judicial commissioner) 1인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된다.⁵⁸⁾

(2) 하급 법원

1) 민·형사 법원

민·형사 법원(Session Court)은 민사와 형사에 관한 일반적 사건에 대하여 관할하는데,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사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사건만 담당할 수 있으며, 사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는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또한,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소송가액이 말레이시아의 통화인 말레이 링깃(Malay Ringit)으로 25,000 링깃 초과, 250,000 링깃 이하의 사건을 담당한다.

2) 치안판사법원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진다. 1급 치안판사법원의 치안판사(Magistrate)는 법조 자격을 충족시키는 강한 판사로 비교적 강한 권한을 가지는데, 10년을 넘지 않는 자유형 또는 벌금형만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또는 강간,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파

56)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122조AA(1); 박종현, 앞의 글, 79면.

57)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122조B.

58) 박종현, 앞의 글, 79면.

괴를 포함하는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급 치안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은 5년의 자유형, 1만 링깃의 벌금, 12회까지의 채찍형을 초과할 수 없다. 민사 사건의 경우 소액이 25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⁵⁹⁾

2급 치안판사법원의 치안판사는 범조자격을 갖추지 않은 판사로, 12개월 미만의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사 사건에 관하여 6개월 이하의 구금, 1,000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일반적으로는 임명되지 않고 있다.⁶⁰⁾

치안판사법원은 평홀루법원(Penghulu's Court)으로부터의 상소 사건도 담당한다.

(3) 기타 법원

1) 평홀루 법원

평홀루(Penghulu)는 말레이 마을의 수장을 일컫는 말로, 공식적으로는 최하위 행정단위인 무킴(Mukim)의 수장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 행정관이지만, 일정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사법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소송가액이 50 링깃을 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1) 아시아계 인종이고 (2) 말레이어로 소통이 가능한 경우 사건을 관할한다.⁶¹⁾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벌금이 50 링깃을 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을 관할할 수 있으나, 피고는 치안판사법원을 원심법원으로 택할 수 있다. 평홀루 법원의 판결은 1급 치안판사에게 상소할 수 있다.

59) 류창호, 앞의 글, 45면.

60) Id.; 박종현, 앞의 글, 81면

61) 1964년 말레이시아 법원법(Courts of Judicature Act 1964) 제94-97조; 박종현, 앞의 글, 82면.

2) 원주민 법원

사바 및 사라와크 지역에는 평홀루법원 대신 원주민 법원(Native Court)이 존재하며, 이는 보르네오 섬 지역의 토착민들인 이반족, 카다잔족 등의 소수민족들의 토착법원을 말한다. 원주민 법원에서는 원주민 부족장에게 재판관의 권한이 부여되며, 경미한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관할할 수 있고, 특히 원주민 법과 관습에 대한 문제를 담당한다.⁶²⁾

3) 아동법원

아동법원(The Court for Children)은 18세 이하 청소년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고 있으나, 사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죄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관할을 갖는다. 아동법원의 사건들에는 2001년 아동법(Child Act 2001)의 규율이 적용된다.⁶³⁾

4) 특별법원

특별법원(Special Court)는 통치자의 범죄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기 위하여 1993년에 설립되었다. 여기서 통치자란 국왕(Yang Di-Pertuan Agong), 말레이시아의 군주제 주들의 술탄(Sultan), 주지사(Yang Di-Pertua Negeri), 주의 군주(Yang Di-Pertuan Besar) 등이 포함된다.⁶⁴⁾

(4) 소 결

말레이시아는 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 다민족적 문화와 식민통치 역사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수성(minority), 민족

62) Id.

63) 박종현, 앞의 글, 82면.

64) Id.

성(ethnicity), 종교(religion)를 존중하는 사법제도가 형성되어왔다. 지역에 따라 마을의 수장이 판사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민족과 언어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평홀루 법원이나 원주민 법원이 사법제도의 하위에 존재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즉,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법제도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일반 사법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이슬람 사법제도가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여준다.

2. 이슬람 사법제도와 이슬람법

세계적으로 이슬람국가인 경우에도 국가 제도 내에서 일반 사법제도와 이슬람 사법제도가 개별적인 법원체계를 가지고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민족성과 종교에 따라 차별적인 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 사법제도와 별도로 이슬람법과 관행을 따르는 이슬람교도를 위한 이슬람 사법제도가 병존한다.

(1) 샤리아법원 체계와 관할권

샤리아법원은 주의 이슬람법에 관한 사건들에 대하여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슬람교도의 가족법 사안을 포함한 민사사건, 연방법이 규정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슬람법이나 말레이관습법을 적용한다.⁶⁵⁾

샤리아법원을 설치할 권한은 연방헌법에 따라 주정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연방정부의 직할통치를 받는 연방지구(Federal Territories), 즉 수도인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행정신도시 푸트라 자야(Putra Jaya), 라부안(Labuan)와 13개의 주에 각각 샤리아상고법원(Mahkamah Rayuan Syariah), 샤리아고등법원(Mahkamah Tinggi Syariah), 샤리아하급법원(Mahkamah Rendah Syariah)이 설치되어 있다.

65) 류창호, 앞의 논문, 47면; Abu Bakar Munir, 앞의 글, 7면.

구체적으로 연방헌법에 나열된 샤리아법원의 관할권에는 (1) 쿠알라룸푸르 및 라부안의 연방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상속, 유언, 약혼, 혼인, 이혼, 부양료, 양자, 적출, 후견, 증여, 재산부여, 자선(Wakaf) 또는 종교목적의 신탁규제, 신탁자의 임명, 이슬람교의 종교 또는 자선목적의 기부, 조직, 신탁, 자선사업에 관한 법인의 설립 및 주 내부에서 활동하는 자선사업 및 자선단체 등에 관한 이슬람법 및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자의 가족법 및 인사법(人事法); (2) 말레이의 관습에 관한 사항; (3) 이슬람교의 수입⁶⁶⁾; (4) 모스크 또는 이슬람교 예배장소; (5) 연방관할에 포함되는 영역을 제외한 이슬람교의 의무에 반하는 이슬람교도의 범죄의 신설 및 처벌; (6)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 또는 이슬람교도의 의무 규율은 제외한 이슬람교신자에 대하여 또는 위에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 샤리아법원의 구성, 조직 및 절차; (7) 이슬람법 및 말레이의 관습상의 사항에 대한 판단 등이 포함된다.⁶⁷⁾

또한, 1965년 샤리아법원(형사관할권)법⁶⁸⁾에 따르면 샤리아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링깃, 채찍형 6대, 또는 이 셋의 조합으로 처벌 가능한 형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샤리아상고법원, 샤리아고등법원, 샤리아하급법원의 구체적인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샤리아하급법원은 샤리아 법원체계의 최하위에 있는 법원으로, 2,000링깃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과 가액 10만 링깃 또는 금액으로 산정 불가능한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⁶⁹⁾

66) “Zakat, Fitrah and Baitulmal or similar Islamic religious revenue”를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부칙 제9조 표2 제1조.

67)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부칙 제9조 표2 제1조. (원문에는 이슬람교 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번역은 류창호, 앞의 글, 47면을 참고하였다.)

68) Syariah Courts (Criminal Jurisdiction) Act 1965.

69) Abu Bakar Munir, 앞의 글, 9면.

샤리아고등법원은 원심과 상소를 둘 다 맡을 수 있으며, 감독과 검토의 역할 또한 맡고 있다. 주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원심을 맡을 수 있는데, 주로 약혼, 결혼, 이혼, 결혼의 무효, 별거, 결혼재산의 분할, 부양, 친자확인, 후견, 양육권, 유산, 선물, 자선 및 이슬람법에 반하는 행위(근친상간), 주류의 섭취, 금식기간(Ramadan) 동안 금식하지 않는 행위 등의 가족법과 인사법에 관한 영역이다.⁷⁰⁾

샤리아고등법원은 또한 개인의 지위나 부양에 관한 사건 중 가액 1,000 링깃 이상의 민사 사건과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형사 사건에 대한 상소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샤리아상고법원은 샤리아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대법관(Chief Sharie Judge)과 두 명의 법관이 재판권을 맡는다. 샤리아상고법원은 샤리아고등법원에 대하여 감독과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형사를 불문하고 재판의 어느 과정에서든지 문서와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연방헌법에 의하면 샤리아법원은 이슬람교도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해당 주 또는 연방지구 내에서만 관할권을 가진다.⁷¹⁾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지역 간에 샤리아의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총리 산하의 샤리아사법청(Jabatan Kehakiman Syariah Malaysia, Department of Syariah Judiciary Malaysia)이 국가적 차원에서 샤리아법원들을 조율하고 있다.

(2) 이슬람법과 파트와

말레이시아는 영미법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샤리아에 근거한 법들을 제정해왔으며, 그 역사는 최초 이슬람교가 도입된 시대로 거슬러올라간다.⁷²⁾

70) Id., 9면.

71) Id.

72) 예를 들어, 말라카법 (Undang-Undang Melaka 또는 Risalat Hukum Kanun), 1789년 조

현재 샤리아는 연방헌법에 따라 각 주에 입법권이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직할통치를 받는 연방지구(Federal Territories), 즉 수도인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행정신도시 푸트라 자야(Putra Jaya), 라부안(Labuan)에서는 연방정부가 제정하는 법률(Act)로 입법화되고, 나머지 13개 주에서는 법규(Enactment 또는 Ordinance)로 정해진다.⁷³⁾ 현재 연방지구를 비롯한 모든 주에서 이슬람가족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이슬람형사법과 형사소송법, 이슬람민사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8 : 이슬람법 법제화 및 시행 현황>

이슬람법제 (Act/Enactment/Ordinance)	제정 지역
이슬람법 집행(Administration of Islamic Law) 관련 법제	연방 지구, Kedah, Pahang
이슬람교의 행정(Administration of the Religion of Islam) 관련 법제	Johor, Melaka, Negeri Sembilan, Penang, Perak, Perlis, Selangor, Terengganu
이슬람 가족법(Islamic Family Law)	연방 지구, Johor, Kedah, Kelantan, Melaka, Negeri Sembilan, Pahang, Penang, Perak, Perlis, Sabah, Sarawak, Selangor, Terengganu

호르 다이제스트(Majallah Ahkam Johor and Ahkam Syariyyah Johor), 1880년 회교도결혼조례(Mohamaden Marriage Ordinance of 1880), 브루나이법(사라왁주는 당시 브루나이에 속해있었음), 1954년 이슬람회설립명령(Majlis Islam (Incorporation) Order 1954), 1936년 이슬람법 및 관행규칙 모음(Collection of Islamic Laws and Customary Rules 1936), 1937년에 선주민행정조례(Native Administration Ordinance 1937)로 교체된 1902년 회교도관행선포(Mohamedan Customs Proclamation 1902). Abu Bakar Munir, 앞의 자문서, 3면.

73) E-Syariah Official Portal, Syariah Law, available at <http://www.esyariah.gov.my> (last visited October 1, 2012).

이슬람법제 (Act/Enactment/Ordinance)	제정 지역
샤리아법원의 형사관할 (Syariah Courts (Criminal Jurisdiction)) 관련 법제	연방 지구
샤리아법원(Syariah Courts) 관련 법제	Kedah, Kelantan, Sabah, Terengganu
샤리아형사법(Syariah Criminal Offences/Criminal Code)	연방 지구, Johor, Kedah, Kelantan, Melaka, Negeri Sembilan, Penang, Perak, Sabah, Sarawak, Selangor, Terengganu
샤리아형사소송법(Syariah Criminal Procedure)	연방 지구, Johor, Kedah, Kelantan, Melaka, Negeri Sembilan, Pahang, Penang, Perak, Sabah, Sarawak, Selangor, Terengganu
샤리아민사소송법(Syariah Civil Procedure)	
샤리아증거법(Syariah Court Evidence)	
이슬람종교학교의 운영(Control of Islamic Religious Schools) 관련 법제	Johor, Kedah, Negeri Sembilan, Penang, Perak, Sabah, Selangor
이슬람교 외 종교의 포교에 대한 관리와 제재(Control and Restriction of the Propagation of Non-Islamic Religions) 관련 법제	Johor, Kedah, Kelantan, Melaka, Melaka, Negeri Sembilan, Pahang, Perak, Selangor, Terengganu
무프티 및 파트와(Mufti/Fatwa) 관련 법제	Kedah, Sabah, Sabah
와카프(Wakaf) 및 이슬람 기부금 관련 법제	Melaka, Negeri Sembilan, Selangor
마즐리스(Majlis) 관련 법제	Perak, Sabah, Sarawak

이슬람법제 (Act/Enactment/Ordinance)	제정 지역
이슬람교와 말레이관습 위원회(Council of the Religion of Islam and Malay Custom) 관련 법제	Kelantan
이슬람교도 상속(Muslim Wills) 관련 법제	Melaka, Negeri Sembilan, Selangor
수피파신비주의(Tarekat Tasawuf) 관련 법제	Negeri Sembilan
이슬람 종교세(Zakat/Fitrah) 관련 법제	Sabah, Sarawak

출처: E-Syariah Official Portal, Syariah Law, available at <http://www.esyariah.gov.my> (last visited October 1, 2012) 요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교의 수니파 중 샤피학파가 주도적이다. 샤피학파는 코란, 하디스, 이즈마 그리고 키야스만을 법원으로 인정하는데, 이와 같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대중에게 공표하는 것을 파트와(Fatwa)라고 한다.⁷⁴⁾

다시 말해 파트와는 이슬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애매한 부분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으로, 공적으로 인정받은 이슬람법학자인 무프티⁷⁵⁾가 특정 문제에 대하여 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맡는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법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에 의해 주정부에 그 입법권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각 주의 조례에 따라 무프티와 파트와 기구가 세워지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파트와위원회(National Fatwa

74) 김용운, “말레이시아 이슬람법의 파트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 7면.

75)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총 14명의 무프티가 있다. e-Fatwa, “What is Fatwa”, Portal Rasmi Fatwa Malaysia, available at <http://www.e-fatwa.gov.my/apa-itu-fatwa> (last visited October 10, 2012).

Committee)⁷⁶⁾가 존재한다. 1970년 초반에 설립된 이 위원회는 이슬람 개발국(JAKIM) 산하에 있으며, 총 13개 주의 주지사들이 모이는 최고 통치자의회의(Conference of Rulers)에서 제안된 이슬람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여 법적 견해를 발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⁷⁷⁾ 파트와 자체는 종교적 규범으로 이슬람교도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단, 이슬람법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주 정부가 파트와를 도입하여 관보(Gazette)에 실을 경우 종교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샤리아법원은 관보에 실린 파트와를 재판에 적용하여야 한다.⁷⁸⁾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연방법인 1993년 연방지구 이슬람법집행법(Administration of Islamic Law (Federal Territories) Act 1993)에 따르면, 무프티의 해석(파트와)이 관보에 실려 발간되면 그 해석은 연방지구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슬람교도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이슬람교도들은 파트와를 준수할 종교적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방지구 내의 모든 법원이 파트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법의 실제 적용에 있어 파트와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할랄과 관련해서도 동일하다. 제품의 할랄 여부와 생산 과정에 샤리아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해에 파트와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트와는 전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식품이나 자재, 새로운 도축 방법 등의 할랄 여부를 정하는데 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⁷⁹⁾

76) 정식 명칭은 Fatwa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for Islamic Religious affairs Malaysia (Jawatankuasa Fatwa Majlis Kebangsaan Bagi Hal Ehwal Islam)이다.

77) e-Fatwa, "What is Fatwa", Portal Rasmi Fatwa Malaysia, available at <http://www.e-fatwa.gov.my/apa-itu-fatwa> (last visited October 10, 2012).

78) Id.

79) 말레이시아의 파트와는 크게 12개로 분류되며, 신앙, 예배, 범죄, 경제, 의약학, 금융, 결혼(Munakahat), 음식료, 의류, 동물 및 그 외의 카테고리가 있다. Id.

예를 들어 2011년 6월에 국가파트위위원회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파트와를 발행하였다.⁸⁰⁾ 이 외에도 와인으로 만든 식초, 도살 전의 전기충격, 돼지 인슐린 주사, 가축에 사용하는 돼지 호르몬, 돼지 털의 사용, 달팽이 양식과 같은 식품과 관련된 이슈와, 황토 비누, 커피루왁,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한 각종 예방접종용 백신, 눈과 심장의 이식, 삽입렌즈(ICL)과 같은 미용 및 의료 관련 이슈에 대하여 파트와가 내려진 바 있다.⁸¹⁾

제 3 절 말레이시아의 할랄 관련 법과 제도

1. 개 관

현재로서는 할랄 인증을 위한 국제 기준이나 할랄 인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 공인 기관이 없으며, 국가 별로 정부, 민간, 또는 종교 기관에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150~200여개의 할랄 인증 기구가 존재하며, 자가 인증을 발행하는 업체도 있다.⁸²⁾ 최근에는 지나치게 다양한 인증 체계와 로고로 인하여 혼선이 야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인증 절차로 인하여 인증 로고의 신뢰성이 추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은 정부가 주도한 규격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를 포함하여 기타 이슬람국 할랄 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⁸³⁾

80) e-Fatwa, "Eating Genetically Modified Food Law", Portal Rasmi Fatwa Malaysia, <http://www.e-fatwa.gov.my/fatwa-kebangsaan/hukum-memakan-makanan-terubahsuai-genetik-genetic-modified-food> (last visited: October 10, 2012).

81) Id.

82) 농수산물유통공사, "할랄식품 시장진출로 거대 무슬림시장 공략", AT Focus Vol.02/110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2 참고.

83) 공이철, 위의 글, 3면 참조; 농수산물유통공사, 위의 글, 18면.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의 기본 개념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제2장 168절에 등장하는 할랄(Halal)이라는 단어와 토이반(Thoyyiban)이라는 단어에 근거하고 있다.⁸⁴⁾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이라는 뜻이고, 토이반은 “양질의, 안전한, 청결한, 영양가 높은, 믿을 만한”이라는 뜻을 의미한다.⁸⁵⁾ 즉, 말레이시아의 할랄 규격은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 기술적인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로 할랄 인증 신청자에게 적정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과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등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⁸⁶⁾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은 정부 기관인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인증 기준과 절차는 「말레이시아 규격 1500 : 2009 할랄 식품 - 생산, 처리, 취급, 저장에 관한 종합 가이드라인(2차 개정)(이하 MS 1500)」⁸⁷⁾에서 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식품류를 판매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며, 비(非)이슬람교도층을 타겟으로 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⁸⁸⁾ 만에 하나 인증을 획득한 이후 식품이나 생산시설이 규격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타 법령에 저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취소당할 뿐 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않는다.⁸⁹⁾ 따라서 할랄 관련 규격 외에도 할랄 상품의 교역이나 위조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을 아울러 주목할 필요가 있다.

84) “사람들이여 지상에 있는 허용된 좋은 것을 먹되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실로 너희들의 반역자라.” 코란 제2장 168절.

85)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Halalan Toyyiban”, available at http://www.hdcglobal.com/publisher/cdh_halalan_toyyiban (last visited October 1, 2012).

86) Id.

87) MS 1500:2009 (E&M), Halal Food - Production, Preparation, Handling And Storage - General guidelines (Second revision).

88) 단,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슬람개발국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처리된 육류이어야 한다. Mian N. Riaz & Muhammad M. Chaudry, Halal Food Production, CRC Press (US, 2004), p. 52.

89) 따라서 할랄 인증은 “최저규격이 아닌, 취득함으로써 플러스평가를 받게 되는 우량규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 財団法人食品産業センター, 앞의 보고서, 6면.

2. 할랄 관련 규격

(1) 개 관

말레이시아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산하 부서인 말레이시아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에서 말레이시아표준법(Standards of Malaysia Act 1996)을 근거로 각종 Malaysia Standard(이하 MS), 즉 국가 인증 규격을 정하고 있다.⁹⁰⁾ 이 중 할랄과 관련된 MS는 다음의 표와 같다.⁹¹⁾

<표-10 : 할랄 관련 말레이시아 규격>

MS 번호	제 목
MS 1500:2009	할랄 식품 - 생산, 처리, 취급, 저장에 관한 종합 가이드라인(2차 개정)
MS 1900:2005	품질 관리 시스템 - 이슬람 관점에서의 요건
MS 2200: PART 1: 2008	이슬람 소비재 - 제1부: 화장품과 개인 미·위생용품 - 종합 가이드라인
MS 2200: PART2: 2012	이슬람 소비재 - 제2부: 동물의 뼈, 가죽, 털 - 종합 가이드라인
MS 2424:2012	할랄 의약품 - 종합 가이드라인

90)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bout Us, available at http://www.standardsmalaysia.gov.my/v3a/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7&Itemid=55&lang=en (last accessed July 13m 2012).

91) 표에 나타난 규격 외에도 할랄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규격이 다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겠다.

MS 번호	제 목
MS 2300-2009	가치기준 관리 시스템 - 이슬람 관점에서의 요건
MS 2400-1:2010	Halalan-Toyyiban Assurance Pipeline - 상품 및 하역 체인 사업 관리 시스템
MS 2400-2:2010	Halalan-Toyyiban Assurance Pipeline - 창고 저장 및 관련 활동 관리 시스템
MS 2400-3:2010	Halalan-Toyyiban Assurance Pipeline - 소매 관리 시 스템
MS 2393:2010	이슬람 원칙과 할랄 - 용어 정의와 해석

이 중 식품의 할랄 인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격은 MS 1500이며, 2004년에 공포된 뒤 한 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다.

MS는 ISO나 HACCP과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원칙적으로 임의규격으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MS가 규제법이나 지방조례에 도입되어 법적 지위를 갖는 경우 강제규격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류의 처리법에 명시된 할랄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말레이시아로 육류를 수출할 수 없게 되므로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⁹²⁾

(2) MS 1500

MS 1500은 이슬람개발국이 발행하는 할랄 식품의 인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격이다. MS 1500은 식자재를 비롯하여 가공 과정, 저장,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

92) 並河良一, 「ハラール制度の概要・実務と市場開拓のハードル」, 2011. 4, p.5; See also, Pauline Chan, Investigation of Commodity Food Standards and Analytical Methods in Asia: Malaysia, Singapore & Philippines, International Life Sciences Institute, 2010. 4. 5.

며, 엄격한 심사를 걸쳐 부여된 할랄 인증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인증 절차나 이슬람법 위배 시 만료 전에도 이슬람개발국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표-11 : MS 1500 연혁>

연 도	내 용
2003. 4	말레이시아를 할랄 식품 생산의 지역적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Developing Malaysia as the Regional Halal Food Production Hub)가 할랄 식품에 관한 말레이시아의 규격 개정에 합의함
2003. 5. 10	할랄식품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Halal Food)가 발족되어 이슬람개발국과 함께 할랄식품에 관한 말레이시아규격을 책정함
2004. 6. 28	과학기술혁신부(MOSTI)가 MS 1500:2004를 승인함
2004. 7. 10	MS 1500:2004가 공포됨
2004. 8. 16	수상이 MS 1500:2004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2009.	규격이 개정되어 MS 1500:2009가 발표됨
현 재	이슬람개발국이 MS 1500:2009를 할랄 인증 기준으로 할랄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출처: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ハラル産業に対する理解」2009. 12 요약·재구성.

1) MS 1500의 구성

MS 1500은 소책자 또는 e-book 형태로 발간되어 있으며, 머리말에서 개정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MS 1500의 범

위를 밝히고, 제2항에서는 샤리아, 할랄, 할랄 식품, 나지스, 도축, 관할 기관, 시설(Premises)의 정의를 다루고 있다. 제3항에서는 경영 책임, 시설, 위생, 청결, 식품 안전, 도축, 식품 처리와 취급, 식품의 포장, 표시, 광고, 인증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별첨에서는 도축 시 사용되는 충격요법에 대한 규정과 나지스에 오염되었을 경우의 정화 의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가. 샤리아

샤리아의 정의는 전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종파나 학파에 따라 달리 내릴 수 있으나,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개발국이 부여하는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MS 1500 2.1의 정의를 사용한다. MS 1500 2.1.1에 따르면 샤리아는 의무, 선택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이슬람교도의 행동에 관한 알라의 명령이며, 2.1.2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법 상 샤리아의 정의는 샤피파에서 정하는 이슬람법 또는 말리키, 한발리, 하나피파에서 정한 이슬람법 중 연방지구에서는 왕이, 그 외의 주에서는 주를 관할하는 통치자가 효력을 승인한 것 또는 이슬람위원회가 승인한 파트와를 일컫는다.⁹³⁾

나. 할랄 식품

MS 1500 2.3에 따르면 할랄 식품이란 샤리아에서 허용하는 음식, 음료, 또는 그 재료이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들은 「2011년 교역품표시법」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며, 후쿰 샤락 대신 전 항에서 정의된 샤리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93) 2.1.1 Shariah law is the orders of Allah which relate to the action of the people who are being accountable (mukallaf) by obligation, option or al wadh'ul.

2.1.2 Shariah law defined by Malaysia law means the laws of Islam in the Mazhab of Shafie or the laws of Islam in any of the other Mazhabs of Maliki, Hambali and Hanafi which are approved by the Yang di-Pertuan Agong to be in force in the Federal Territory or the Ruler of any State to be in force in the state or fatwa approved by the Islamic Authority.

할랄 식품은 첫째, 샤리아 하에 비(非)할랄인 동물이나 샤리아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동물의 일부나 그러한 동물로 가공된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샤리아 법 하에 나지스(Najs, 부정한 것)인 것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섭취하기에 안전하고, 독성이 없으며, 취하거나 중독시키지 않으며, 건강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 넷째, 샤리아 법 하에 나지스인 것으로 부정해진 용구를 사용하여 처리, 가공, 생산되지 않았으며, 다섯째로 샤리아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간의 신체 부위나 그에서 유래하는 것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 가공, 취급, 포장, 보존, 유통 중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식품이나 샤리아 법 하에 나지스로 여기는 식품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할랄 식품의 구체적인 분류와 예외는 MS 1500 3.5.1에 나열되어 있다. MS 1500 3.5.1.1에서 3.5.1.7은 할랄 식품의 식자재를 (1) 육상 동물 (2) 수생 동물 (3) 식물 (4) 버섯 및 미생물 (5) 천연 광물 및 천연 화학 물질 (6) 음료 (7)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구분하여 할랄인지 아닌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물과 일부 수생 생물에는 할랄이 아닌 것 또는 할랄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어려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식자재에 대해서는 유독한 것, 중독성이 있는 것, 건강을 해치는 것을 제외하고 미생물이나 발효 생산물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할랄로 되어있다.

① 육상 동물

MS 1500 3.5.1.1.1에서는 다음의 종류를 제외하고 모든 육상 동물을 할랄로 정하고 있다: (1) 샤리아 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동물, (2) 부정한 동물(나지스 무가라자), 즉 돼지, 개 및 그 자손 (3) 호랑이, 곰, 코끼리, 고양이, 원숭이 등 먹이를 죽일 수 있는 길고 날카로운 이빨과 이빨을 가진 동물, (3) 독수리, 올빼미 등과 같이 날카로운 발

톱이 있는 새(포식조, predator birds), (4) 쥐, 바퀴벌레, 지네, 전갈, 뱀, 사냥 벌 등의 병원균을 옮기는 동물과 독을 가진 동물, (5) 꿀벌(al-nahlah)⁹⁴⁾, 딱따구리(hud-hud) 등 이슬람교에서 죽이는 것을 금하는 동물, (6) 이, 파리 등의 혐오 동물, (7)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지스를 섭취한 할랄 가축, (8) 기타 당나귀, 노새 등 샴리아에서 섭취가 금지된 동물.

② 수생 동물

수생 생물은 물고기와 같이 수중에 서식하고 물 밖에서는 생존 할 수 없는 동물을 말하는데, 독성이나 중독성이 있는 경우와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산물은 모두 할랄이지만 몇몇 예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악어, 거북이, 개구리 등과 같이 수륙 양생하는 경우, 나지에 서식하는 경우,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지스를 섭취한 경우에는 할랄이 아니다.

③ 식 물

독성이나 중독성이 있는 경우와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식물과 그에서 파생된 것들은 할랄이다.⁹⁵⁾

④ 버섯 및 미생물

독성이나 중독성이 있는 경우와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버섯류와 박테리아, 해조류, 곰팡이류를 포함한 미생물 및 그에서 파생된 것들은 할랄이다.⁹⁶⁾

94) 단, 꿀은 할랄이다.

95) 단, 財団法人 食品産業センター「マレーシアハラル制度の実務」2010.3의 11면에서는 돼지의 배설물이 들어간 비료를 사용한 작물은 어려운 문제로, 말레이시아 파트와(Fatwa)위원회는 돼지의 비료를 가장 부정한 나지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의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한 작물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96) 財団法人 食品産業センター「マレーシアハラル制度の実務」2010.3의 12면에서 의하면 독성이나 중독성이 있는 경우,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콜을 발효

⑤ 천연광물 및 천연화학물질

독성이나 중독성이 있는 경우와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천연광물과 천연화학물질은 할랄이다.

⑥ 음 료

독성이나 중독성이 있는 경우와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물과 음료는 할랄이다. 물론, 알콜류는 샤리아에서 하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랄이 아니다.⁹⁷⁾

⑦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food, GMO)나 그 부산물을 함유하는 음·식료품, 샤리아 하에 할랄이 아닌 동물의 유전자를 포함한 음·식료품은 할랄이 아니다.⁹⁸⁾

다. 나지스

MS 1500 2.4에서는 할랄 식품의 정의에 이어 나지스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나지스란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가장 심한 나지스인 무가라자(Mughallazah)는 개의 돼지(Khinzir) 및 개와 돼지의 개구부

시키는 효모 자체도 할랄이며, 미생물을 배양 또는 보존하는 한천(agar)은 할랄이 아니므로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97) 단, 미량의 알콜을 포함하는 간장이나 식초는 함유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할랄이며, 쌀, 포도로 만드는 식초는 할랄일 가능성이 높으나 술, 와인으로 만드는 식초는 할랄이 아니다. 또한, 소독이나 엑기스의 추출에 공업용 에타놀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외에도 애매한 경우에는 이슬람개발국과의 확인이 필요하다. 財団法人 食品産業センター「マレーシアハラルの実務」2010.3, 12면.

98) 단, GMO를 분별하지 못하는 옥수수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것은 의심스러운(슈바)을 피하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피해야 하지만, 다루라(Darūra: 사회적 필요) (다른 가지고 갈 대안이 없는 경우나 비상사태 포함)의 경우에는 사용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루라 상태가 해소되면 그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루라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식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해석된다. 財団法人 食品産業センター「マレーシアハラルの実務」2010.3, 12면.

(orifices)에서 배출되는 액체와 물질, 자손, 및 파생물을 포함한다. 무카화화(Mukhaffafah)는 가벼운 나지스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모유 이외에는 마시지 않은 2세 이하의 남자 아이의 소변이다. 마지막으로 무타왓시타(Mutawassitah)는 중간 정도의 나지스로 구토, 고름, 혈액, 주류와 중독성 있는 음식(Khamar), 죽은 고기 및 그 개구부에서 나온 액체와 물체 등을 포함한다.

MS 1500에서는 샤리아 하의 대표적인 나지스로 (1) 개와 돼지 및 그 자손, (2) 비(非)할랄인 것으로 오염된 할랄 식품, (3) 비(非)할랄인 것과 직접 접촉한 할랄 식품, (4) 사람이나 동물의 개구부에서 배출된 액체와 물체, 즉 대소변, 피, 구토물, 고름, 태반, 돼지와 개의 정액과 난자(단, 다른 동물의 정액과 난자, 젖은 제외), (5) 죽은 고기 또는 샤리아 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할랄 동물, (6) 주류 및 주류를 함유되거나 주류와 혼합된 음·식료품을 꼽는다.

2) 할랄 인증의 주요 요건

가. 경영자의 책임에 관한 요건

MS 1500 3.1은 경영자(Management)의 책임에 관한 부분으로, 세 가지가 규정되어있다. 첫째, 사내에서 이슬람교도 할랄관리자를 임명하거나 이슬람교도로 구성된 할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할랄관리자와 할랄위원회의 구성원에 할랄의 원칙과 그 적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회사의 할랄 관리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충분한 경영 자원(인력, 장비, 자금 및 인프라)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시설에 관한 요건

MS 1500 2.7의 정의에 따르면 “시설”은 처리, 도축, 가공, 취급 포장, 저장, 유통, 판매에 사용되는 건물 기타 구조물 뿐 아니라 이 시설이 위치한 토지 및 인접 토지를 의미한다.

MS 1500 3.2에서 정하는 시설에 관한 요건은 열 가지로, 주로 시설의 위생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요건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적절한 처리 작업의 흐름, 작업자의 흐름, 해충의 침입이나 작업 중 오염의 방지를 포함한 우수한 위생과 안전 등을 고려한 시설의 배치이다. 두 번째는 원재료에서부터 완제품의 생산까지 오염을 방지하는 작업 흐름이다. 세 번째는 시설의 청소와 위생 감독을 고려한 시설의 설계이다. 네 번째는 위생 설비의 적절한 설치와 유지, 다섯 번째는 상하기 쉬운 식품의 효과적인 이동을 위하여 적절히 설계된 반입·반출구(loading and unloading bay)이다. 여섯 번째는 기생충의 침입과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리와 유지이다. 일곱 번째는 인력과 기기의 오염 방지를 위한 양돈 시설이나 돈육 처리 시설로부터의 효과적인 분리와 차단이다. 여덟 번째는 도축 시설과 가공 시설이 할랄 도축과 할랄 가공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동물에서 뼈를 발라내고 자르고 포장하고 저장하는 등의 작업이 도축장과 같은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본 규격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다른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애완동물이나 다른 동물은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 장비, 도구, 기기, 처리용구에 대한 요건

할랄 식품의 처리에 사용되는 장비, 도구, 기기, 처리용구(processing aids)는 식품에 직접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하여서도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⁹⁹⁾ 먼저 할랄 식품을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도구, 기기, 처리용구는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샤리아에서 부정한 것, 즉 나지스로 정한 물질로 만들어지거나 그러한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할랄 식품의 가공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장비, 도구, 기기, 처리용구가 나지스

99) 財団法人 食品産業センター「マレーシアハラルの実務」, 2010.3, 9면.

중 가장 부정한 나지스인 무가라자(Mughallazah)와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샤리아에서 정한 의식에 따라 세척해야 한다.¹⁰⁰⁾ 마지막으로, 나지스 무가라자 또는 무가라자가 포함된 것을 처리하던 라인¹⁰¹⁾을 할랄 생산 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라인은 샤리아에서 정한 의식에 따라 세척해야 하며, 이 과정은 관할 기관의 감독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척 이 후 해당 라인에서는 할랄 식품만을 처리해야 하며, 무가라자 라인을 할랄 라인으로 반복해서 변경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마. 위생, 청결, 식품안전에 관한 요건

위생, 청결, 식품안전에 대한 요건은 할랄 식품의 토이반(Thoyyiban) 개념을 강조한 것으로, 종교적인 요소 보다는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에 관한 요소라 볼 수 있다.

MS 1500 3.4에서 요구하는 위생, 청결, 식품안전 요건은 개인위생, 의류, 장비, 기구, 기기, 가공용구를 비롯하여 처리, 제조, 저장 시설에 까지 모두 해당된다.

위생, 청결,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은 할랄 식품 제조자에게 있으며, 제조자는 원재료, 원료, 포장 재질의 사전 검사,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 해로운 화학품의 적절한 관리, 플라스틱, 유리, 금속, 먼지, 해로운 기체나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방지, 허가된 식품첨가제의 과다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할랄 식품은 적정위생기준(Good Hygiene Practices, GHP), 적정 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alaysia), MS 1514 또는 MS 1480 및 관할 기관이 시행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에 관한 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처리, 포장, 유통되어야 한다.

100) 이 의식에 대해서는 MS 1500의 Annex B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01) 예를 들어 돈육을 처리·가공하던 시설을 말한다.

바. 할랄 식품의 도축에 관한 요건

MS 1500 3.5.2에서 다루는 도축에 대한 요건은 샤리아에 나타난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것으로, 이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도축에 대한 요건은 15가지의 긴 항목이며, 할랄 인증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까다로운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첫째, 도축은 이슬람 동물의 도축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과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Baligh) 이슬람교도가 행해야 한다. 도축인(slaughter man)은 관할 기관이 발급하는 할랄 도축 인증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도축의 행위는 의도(niyah, intention)를 가지고 알라의 이름으로 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도축하는 동물은 할랄이어야 하며, 도축하는 동물은 도살 시 살아있거나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hayat al-mustaqirrah)¹⁰²⁾이어야 한다. 도축되는 동물은 건강하고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동물이어야 한다. 도축인은 도축 전 타스미야(tasmiyyah)¹⁰³⁾를 외워야 하며, 메카 방향을 향하여 도축하는 것이 권장된다. 도축 라인, 도구, 용구는 할랄 도축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도축용 칼이나 날은 날카롭고 불순물이나 혈액이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도축은 한 번 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축 중 칼이나 날이 동물에서 분리되지 않은 한 “툽질” 동작, 즉 찌는 행위는 허용된다. 뼈, 발톱 및 치아는 도축 용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할랄 도축은 목젓 바로 아래 (목이 긴 동물은 목젓 아래의 적당한 부분)의 절단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도축은 기도(halqum, trachea)와 식도(mari, oesophagus), 경동맥과 경정맥

102)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란 동물이 도축된 후 피가 쏟아져 나오고 동물의 움직임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MS 1500:2009 Ft.3, p.6.

103) “BISMILLAH ALLAHUAKBAR” (전능하고 위대한 알라의 이름으로) 및 “BISMILLAHIRRAHMANIRRAHIM” (은혜롭고 자애로운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기도문을 외운다. MS 1500:2009 Ft.4, p.6.

을 모두 절단하여 동물의 출혈과 죽음을 단시간에 마치도록 해야 한다. 출혈은 자연스럽게 완전해야 한다. 훈련된 이슬람교도 검사관을 임명하여 샤리아에 따라 적정히 도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가금류의 열탕처리는 할랄 도축 후 동물이 죽은 것으로 간주될 때에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물에게 전기충격을 주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나, 전기충격을 줄 때에는 MS 1500 별첨A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사. 할랄 식품의 처리와 취급에 관한 요건

MS 1500의 3.5.3에 따라 모든 할랄 식품과 그 재료는 샤리아 하에 비(非)할랄인 동물 제품이나 부위, 또는 샤리아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동물 제품이나 부위, 샤리아에서 나지스로 정한 것을 사용하여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처리된 식품이나 그 재료는 섭취하기에 안전하고 독성, 중독성이 없어야 하며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할랄 식품을 처리, 가공, 제조하는 기기와 시설은 나지스로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처리, 가공, 취급, 포장, 저장, 유통, 제공의 모든 단계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이나 샤리아에서 나지스로 정한 것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아. 할랄 식품의 포장, 표시, 광고에 관한 요건

MS 1500 3.7에 따라 할랄 식품은 적절히 포장되어야 하며, 포장 재질 또한 할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포장 재질은 샤리아에서 나지스로 정한 원재료나 독성이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나지스로 오염된 가공·제조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할랄 식품의 처리, 가공, 저장, 운반 과정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이나 샤리아에서 나지스로 정한 것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포장 디자인, 심볼, 로고, 상표명, 그림 등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샤리아에 반해서는 안 된다.

포장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시 재질(labeling material)은 해롭지 않고 할랄이어야 한다. 할랄 식품과 할랄 인공향료는 비(非)할랄 제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명명되어서는 안 되며, 예를 들어 햄, 박쿠테(bak kut teh), 베이컨, 맥주, 럼 등과 같이 혼동스러운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모든 용기는 알아보기 쉬운 표시 또는 라벨이 있어야 하며, 제품의 이름, SI 단위를 사용한 총량, 제조자, 수입자, 배포자의 이름, 주소와 상표, 재료명, 생산번호와 유통기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일차 식육 제품(primary meat product)일 경우에는 도축일과 처리일자를 아울러 표기해야 한다.

할랄 식품의 광고는 샤리아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샤리아에 반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할랄 식품은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유효한 관련 법과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¹⁰⁴⁾

104) MS 1500 본문 내에서 MS 1500과 관련 법과의 구체적인 관계는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으나, 뒷면 참고문헌에는 다음의 법과 규정 및 MS가 나열되어 있다 :

- (1) MS 1480, Food Safety according to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 (2) MS 1514,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for food;
- (3) MS 1900,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from Islamic perspectives;
- (4) Animal Ordinance 1952;
- (5) Food Act 2009; (6) Food Act 1983 and Food Regulations 1985;
- (7) Food Act 1983 and Food Hygiene Regulations 2009;
- (8) Intestate Succession Ordinance 1960, State of Sabah;
- (9) Majlis Islam Sarawak Ordinance 2011, Laws of Sarawak;
- (10) Trade Description Act 1972;
- (11) Garispanduan amalan pengilangan yang baik, 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Ministry of Health Malaysia;
- (12) Manual Procedure of Halal Certification Malaysia,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 (13) The Malaysian Protocol for Halal Meat Production - Ruminants,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자. 컴플라이언스와 인증

MS 1500에 부합하는 제품들은 MS 1500 3조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준수 여부는 관할 기관이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의 관할 기관에 의해 부여되며,¹⁰⁵⁾ 그러한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각 제품은 MS 1500를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랄 인증을 받았음을 표시할 수 있다.

(3) MS 2424

이슬람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섭취하는 의약품에 있어서는 할랄 및 하람에 관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질병에 대하여 대체 의약품이 없는 처방 약품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¹⁰⁶⁾ 하지만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불가피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할랄과 관련된 제재들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규격 2424: 할랄 의약품 - 종합 가이드라인(이하 MS 2424)」¹⁰⁷⁾은 2012년 2월에 발표된 가장 최신 할랄 관련 규격으로, 규격 MS 1500과 유사한 구조 및 규격 요건들을 정하고 있다. 이는 식품과 의약품의 원재료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 MS 2424에서는 MS 1500에 비하여 시설과 품질관리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고, 추가적인 종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

105) 현재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국(JAKIM)이다. 2003년 4월 최초 할랄 관련 MS가 만들어진 뒤 같은 해 5월 JAKIM이 발족되어 이후 할랄규격의 심사를 담당해왔다. 2006년 9월에 수상직속 할랄산업개발공사(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HDC)로 그 관할권이 옮겨졌으나, 2009년부터 다시 JAKIM으로 옮겨져 온 이후 현재까지도 JAKIM이 담당하고 있다. 할랄 업무는 JAKIM과 HDC 외에도 이슬람교, 동물위생, 공중위생, 식품안전 등과 관련된 기관들이 연계하여 담당하고 있다. 財団法人 食品産業センター「マレーシアハラル制度の実務」2010.3, 6면.

106) Mian N. Riaz & Muhammad M. Chaudry, p.91.

107) MS 2424 : 2012 Halal Pharmaceuticals - General Guidelines.

다. 예를 들어, MS 2424 4.3-.5는 모두 품질관리에 대한 조항으로, 할랄보장시스템(Halal Assurance System), 적정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할랄품질관리(Halal Quality Control)를 도입하고 있으며, MS 2424 4.12에서는 의약품 생산 시설에 기도실을 구비할 것을 정하고 있다.

향후 MS 1500이 개정된다면 MS 2424와 유사하게 품질관리와 종교적 요소에 관한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농수산물산업은 건강식품, 의약품의 제조와 깊이 연계된 산업이 때문에 MS 2424의 요건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할랄 관련 법제

할랄 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1972년과 2011년에 제정된 「교역품명시법(Trade Description Act)」을 꼽을 수 있다. 「1972년 교역품명시법」은 2011년에 폐지되었지만, 이를 대체한 「2011년 교역품명시법」은 기본적으로 「1972년 교역품명시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기술적인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된 부분들은 말레이시아 할랄 관련 법제의 향후 정책과 관련법 개정 추세에 대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1972년 교역품명시법」과 「2011년 교역품명시법」 양쪽을 모두 검토하고자 한다.

(1) 「1972년 교역품명시법」 및 관련 훈령

교역품명시법은 할랄 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으로, 할랄의 법적 정의, 할랄 로고의 표시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 가해질 수 있는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1972년 교역품명시법(Trade Description Act 1972)」 및 동법의 제10조와 관련한 「교역품명시훈령

(할랄이라는 표현의 용법),¹⁰⁸⁾ 제11조와 관련한 「교역품명시훈령(식품 표시)」는 할랄이라는 용어의 법적 정의와 할랄 표기 등을 다루었다.

<표-12: 「교역품명시훈령(할랄이라는 표현의 용법)」과 「교역품명시훈령(식품 표시)의 조항별 내용>

「교역품명시훈령(할랄이라는 표현의 용법)」	
조 항	주요내용
1. 인 용	훈령의 정식 명칭과 인용 방법
2. 정 의	“Hukum Syarak”의 의미
3. “할랄”의 정의	교역품에 명시된 “할랄”의 의미
「교역품명시훈령(식품 표시)」	
조 항	주요내용
1. 인 용	훈령의 정식 명칭과 인용 방법
2. 제공되어야 할 정보	할랄로 명시하여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와 육류의 냉장 또는 냉동에 관한 표시

1) 1972년 교역품명시법 제10조와 관련 훈령

「1972년 교역품명시법」의 제10조는 총리가 상품의 사용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교역품과 관련하여 사용된 표현의 명확한 의미를 부여할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이 조항과 관련하여 「교역품명시훈령(할랄이라는 표현의 용법)」이 제정되었다.

이 훈령에 따르면, 상품의 교역에서 음식에 “할랄”, “디-탕공 할랄”(Di-tanggung Halal)이나 “무카난 이슬람”(Mukanan Islam)이라는 표현, 또는 이슬람교도가 섭취하도록 종교적으로 허락된 음식임을 나타

108) Trade Description Order (The Usage of Expression “Halal”) 1975.

내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러한 표현은 (1) 후쿰 샤락(Hukum Syarak)¹⁰⁹에서 이슬람교도가 섭취하는 것을 금하는 동물 및 후쿰 샤락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동물 또는 그 일부가 아니며; (2) 후쿰 샤락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3) 후쿰 샤락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과 접촉한 기구를 사용하여 처리, 가공, 생산되지 않았으며; (4) 처리, 가공, 보존 중 상기 (1)~(3)을 충족시키지 않는 식품이나 후쿰 샤락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식품과 접촉하거나 그러한 식품과 근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1972년 교역품명시법 제11조와 관련 훈령

「1972년 교역품명시법」 제11조는 총리가 상품의 표시(Marking)와 표시의 형태 및 표시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품의 제공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1972년 교역품명시훈령(할랄이라는 표현의 용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훈령에서 정하는 정의에 따른 모든 할랄 식품은 그 식품이 할랄임을 표시하는 라벨, 태그, 또는 다른 형태의 표시를 통해 할랄임을 표시하지 않는 한 제공될 수 없다고 정하였다.

(2) 「2011년 교역품명시법」 및 관련 훈령

2011년에 새로이 제정되어 「1975년 교역품명시법」을 폐지하고 2012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2011년 교역품명시법」(Trade Description Act 2011)은 교역 상품에 대한 표시와 설명 등에 대한 법이다.

109) 후쿰 샤락은 이슬람법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Hukum Syarak’ means the Laws of Islam under the Mazhabs of Maliki, Hambali of Hanafi which are approved by the Yang di Pertuan Agong to be enforced in the Federal Territory or approved by the Ruler of any other state to be enforced in the State.”)

이 법에 근거한 훈령 중 세 개의 훈령이 할랄 인증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1) 「2011년 교역품명시훈령(할랄의 정의)」

「2011년 교역품명시훈령(할랄의 정의)」¹¹⁰⁾는 1975년의 훈령과 유사하나 여러 부분에서 보완된 훈령이다. 1975년 훈령에서 정한 할랄의 정의에 (3)~(5)항을 추가하여, 할랄을 (1) 후쿰 샤락(Hukum Syarak)에서 이슬람교도가 섭취하는 것을 금하는 및 후쿰 샤락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동물 또는 그 일부가 아니며; (2) 후쿰 샤락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3) 후쿰 샤락에서 의미하는 바에 따라 취하거나 증독되지 않았으며; (4) 후쿰 샤락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간의 신체 부위나 그에서 유래하는 것이 함유되지 않았으며; (5) 독성이 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6) 후쿰 샤락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과 접촉한 기구를 사용하여 처리, 가공, 생산되지 않았으며; (7) 처리, 가공, 보존 중 상기 1~3을 충족시키지 않는 식품이나 후쿰 샤락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식품과 접촉하거나 그러한 식품에 근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2011년 훈령에서는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종목에 대해서도 “할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후쿰 샤락에 의거하여 식품 또는 상품과 관련한 서비스를 이슬람교도가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할랄이 아닌 식품을 할랄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혼란을 빚을 경우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는 코란의 구절이나 이슬람교와 관련된 표시를 음식이 제공되는 장소 또는 용기에 포함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위반의 혐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제공한 음식이 할랄이라는 것을 증명할 입증책임을 가진다.

110) Trade Descriptions (Definition of Halal) Order 2011.

2011년 훈령을 위반했을 경우, 회사는 5백만 링깃의 벌금,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1백만 링깃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위반이나 그 뒤 부터는 회사는 1천만 링깃의 벌금, 개인은 5백만 링깃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2) 「2011년 교역품명시훈령(할랄의 인증과 표시)」

「2011년 교역품명시훈령(할랄의 인증과 표시)」¹¹¹⁾는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국과 각 주의 이슬람위원회(Islamic Religious Council)만을 식품,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할랄 인증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고 훈령에 명시된 로고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식품이나 상품도 할랄 또는 이슬람교도가 소비해도 되는 것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식품이나 상품의 경우에도 이슬람개발국과 이슬람위원회가 인증하고 해당 로고를 표시하거나 동 훈령에 명시된 대로 이슬람개발국이 인정하는 외국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고 그 인증 로고를 표시해야만 상품이나 식품을 할랄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동 훈령에 반하여 식품, 상품, 서비스를 할랄로 인증하거나 식품,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를 위반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20만 링깃의 벌금,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10만 링깃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상의 위반일 경우 회사는 50만 링깃,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25만 링깃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다.

이 훈령의 별표에는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국과 이슬람위원회가 부여하는 할랄 인증 로고와 이들이 인정하는 외국 할랄 인증 기관 53개의 목록이 명시되어 있다.

111) Trade Descriptions (Certification and Marking of Halal) Order 2011.

<그림-2: 말레이시아 할랄 로고>



출처: 「2011년 교역품명시훈령(“할랄”의 인증과 표시)」(Trade Descriptions (Certification and Marking of Halal) Order 2011) 별표1.

3) 「2011년 교역품명시훈령(할랄의 비용의 인증과 표시)」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슬람개발국이나 이슬람위원회가 정한 규격, 절차, 순차 주기에 따라 할랄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비는 「2011년 교역품명시훈령(할랄의 비용의 인증과 표시)」¹¹²⁾에 명시되어 있다.

112) Trade Descriptions (Certification and Marking of Halal Fees) Order 2011

<표-13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비용>

번호	품 목	구 분		링 깃	
1	상품, 물류, 제조업	산업 구분		연간 매출액	
		소규모		50만 링깃 이하	100
		중간규모		50만 링깃 이상	400
		다국적		25백만 링깃 이상	700
2	도축장	동물 종류에 따른 도축장 규모		하루 도축 수	
		소 규모	닭	1-2,999	100
			염소/양	1-499	
			소/물소	1-49	
		중 간 규모	닭	3,000-10,000	400
			염소/양	500-700	
			소/물소	50-100	
		대 규모	닭	10,000 이상	700
			염소/양	700 이상	
			소/물소	100 이상	
3	식당, 조리장, 호텔	-		장소 별로 100	
4	출장음식	-		100	

출처: 「2011년 교역품명시훈령(할랄의 비용의 인증과 표시)」(Trade Descriptions (Certification and Marking of Halal Fees) Order 2011) 별표.

제 4 장 결 론

우리나라가 7, 80년대 전후 건설업 및 중공업으로 중동 및 동남아시아권에 진출한 지 이미 상당한 세월이 지났으며, 자동차, 전자, IT산업 등으로 진출 분야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에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영상물, 대중음악과 같은 문화 콘텐츠가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 전통 식품과 한국산 화장품, 의약품이 함께 주목 받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슬람권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취득을 통해 타이슬람권 국가로 시장을 확대한 바 있고,¹¹³⁾ 비교적 현대적이고 안정적인 말레이시아가 타 이슬람권 시장으로의 교두보로 꼽히고 있다.¹¹⁴⁾

식품, 화장품, 의약품과 같은 품목은 할랄 여부에 따라 시장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성공적인 시장 점유를 위해서는 할랄 상품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앞서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슬람권 시장에 할랄 상품을 성공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의 법제와 규범 전반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법제와 규범이란 비단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할랄

113) 예를 들어, 일본의 Yakult와 스위스의 Nestle가 대표적이다. Yakult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시작으로 11개국에 걸친 이슬람권 시장으로 진출하였으며, 글로벌 할랄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Nestle는 말레이시아를 할랄 식품의 글로벌 연구 및 생산의 거점으로 하고 있다. 자세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앞의 글, 17면 및 이동훈, 앞의 글, 7면 참조. 식품 부문 외에도 유통, 생활소비재, 금융 등에서 할랄 특화를 통해 이슬람권 시장 점유율을 높인 다기업국가들이 다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는 한석우, “16억 Halal 시장을 잡아라”, Global Business Report 제10권 제26호, KOTRA, 2010 및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http://www.hdcglobal.com/> 참조.

114) 농수산물유통공사, 앞의 글, 18면.

관련 규격과 법 뿐 아니라 기타 수출입 관련 규정 등도 포함한다.

현지 법제 및 규정을 충분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출을 강행하여 실패를 거둔 사례로 2009년 일본의 사가현 와규 사건을 들 수 있다. UAE에 사가현산 와규를 수출할 목적으로 할랄 공정을 거친 소고기를 UAE에 반입하여 시식회와 리셉션을 개최하였으나, 당시 일본 내 이슬람단체가 발행한 인증은 UAE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 시된 바 있다.¹¹⁵⁾

예컨대, 우리나라의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에서 발행하는 할랄 인증의 경우, 아직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주요 할랄 산업 국가에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상품을 할랄로 표시하여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교역품명시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사가현 와규 사건에서는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수출검역을 받지 않은 점 또한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은 해외 시장 진출 시 할랄 관련 법제 뿐 아니라 수출 품목과 관련한 국내외 법에 대하여서도 충분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제2장과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식품공학적으로 종래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료와 공법이 다수 등장하였는데, 신소재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의 파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예로는 2000년 일본의 아지노모토 사건을 들 수 있다. 아지노모토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한 글루타민산소다를 생산 중 거치는 일련의 과정 중에 돼지에서 유래한 효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할랄 식품을 할랄로 판매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¹¹⁶⁾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개발된 재료나 공법에 대하여 할랄 여부가

115) 並河良一, 「ハラル制度の概要・実務と市場開拓のハードル」 2011. 4. p.17; 一般社団法人ハラールビジネス推進協議会, “ハラール (ハラル) 認証とは”, available at <http://halaljapan.jimdo.com/> (last visited October 1, 2012).

116) 자세히는 並河良一, 앞의 글, 19면 참조.

의심스러울 경우 사전에 파트와를 참고로 하거나 할랄 인증 발행처와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이슬람권 시장의 문화적 및 사회적 특성의 파악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에 있어 시장의 특성 파악은 중요한 전략의 일부이지만, 이슬람권의 독특한 문화적·사회적 특성은 이슬람권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일 것이다. HACCP이나 ISO와는 달리 할랄 인증 획득이 난제인 이유는 그 개념이 생소하며, 종교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슬람권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한 마케팅 전략은 시장 우위 점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할랄 관련 규격과 법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패키지 디자인, 색상, 제품 설명 등이 부적절할 경우 터부가 많은 이슬람권의 소비자에게 어필하지 못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법은 생물의 문양을 이미지화 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나 상품의 패키지의 디자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할랄 식품과 비할랄식품이 한 매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이슬람교의 상징인 녹색을 패키징에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비할랄식품과 차별화 하는 전략 등이 주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직감적인 할랄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한 편으로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북미 문화나 여성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한류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

수출품의 선정에 있어서도 이슬람권 시장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육류와 같이 할랄과 비할랄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상품에 비해, 기본적으로 할랄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수입품에 대한 경계심이 약한 편인 상품으로 진출하는 것이 초기비용이나 시장 점유 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법에서 수산 식품의 섭취를 허용하고 있고, 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이러한 품목은 기본적으로 나지스와 접촉하거나 근접하지 않은 이상

할랄 인증을 획득하기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미 김, 농수산물, 과일 등의 품목의 시장 진출과 할랄 인증의 획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를 쌓으면서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이다.

셋째는 정부적 지원의 확대이다. 이슬람권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의 할랄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장려하고 육성시킬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할랄 인증을 통한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하여 정부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유망 수출 종목의 선별과 공략 지원, 이슬람권 정부와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 지원, 그리고 할랄에 대한 인식과 정보 확산을 통하여 시장 진출 준비 지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유망 수출 종목의 선별과 공략이란 대규모 이슬람권 시장이 자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지리와 기후를 가지고 있는 한편, 문화적으로는 우리 문화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망 수출 종목의 선택에 활용하는 것이다.

수출 유망 종목에 대하여 정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예로는 기후나 지리적 여건 상 대규모 낙농업이 용이하지 않은 이슬람권 국가에 식육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할랄 규격을 정하거나 신용도가 높은 할랄 인증을 획득하여 동남아 및 중동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와규와 같은 고품질 특화 상품의 할랄 인증을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여 중산층 이상의 고급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품의 경우, 동남아인구의 입맛에 맞는 라면이 이미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즉, 미각적 틈새시장을 노려 가공식품, 냉동 즉석식품 등의 품목에 매운맛이라는 요소를 접목시킨 상품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성공

적으로 진출한 딸기와 같은 품목에 할랄 인증을 획득하여 보다 넓은 소비층에 어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유망종목을 전략적으로 선별하여 업계 관계자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농수산물은 개별 농가가 인증을 획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예 등을 참고로 하여 조직적으로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권 정부와의 협력 또한 정부적 차원에서 가능한 시장 진출 지원 방법의 하나이다.

중국과 인도, 필리핀은 이슬람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교도의 비율이 높고 지리적으로 이슬람국가들과 가깝기 때문에 할랄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비해 널리 인지되어 있어, 최근 들어 할랄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풍부한 원료와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생산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한편,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만큼 인지도 높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말레이시아의 기업을 유치하여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받은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할랄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윈-윈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 간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¹¹⁷⁾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할랄 산업 주도국의 전문가와 기업을 초빙·유치하여 할랄의 기술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성공적인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슬람권 시장의 규모와 잠재성에 비하여 국내 할랄 전문 컨설팅 업체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정부가 주최·지원하는 할랄 관련 설명회 등이 활발히 개최되고 있는 추세이나, 이와 같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국제적 인지도가 낮은 한국이

117) Liz Gooch, 앞의 글.

슬람교중앙회(KMF) 할랄 인증의 수준을 높이고 홍보와 대외협력을 통해 이슬람권 시장에서 통용되도록 지원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슬람권 시장의 잠재력은 이미 많은 국가들과 다국적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식품, 뷰티, 의약, 문화 산업은 우리나라의 기존 주요 수출품목을 넘어 보다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권 시장 진출에 불가결한 할랄 인증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타 국가나 다국적기업들에 비해 다소 진출이 늦어진 감이 있으나,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과 같이 높은 신뢰도와 인지도를 보유한 할랄 인증에 대한 연구와 인증의 획득을 시작으로 하여 이슬람법과 이슬람국의 법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슬람권 시장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의 파악과 더불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면, 동아시아 지역 이슬람국가의 현대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개방화의 물결과 함께 변화와 성장의 국면을 맞고 있는 이슬람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아가, 보다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하여 향후 인증별, 지역별, 특성별 할랄 인증 제도와 이슬람권 시장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공이철, 「국제시장에서의 할랄(Halal)산업의 가치와 한국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산대학교, 2012.
- 김용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사법제도에 대한 연구”, 법조 제659권 8월호, 법조협회, 2011.
- _____, “말레이시아 이슬람법의 파트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 53권 제2호, 부산대학교, 2012. 5.
- 농수산물유통공사, “할랄식품 시장진출로 거대 무슬림시장 공략”, aT Focus Vol.02/110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2.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무슬림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식품 시장조사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 류창호, “말레이시아의 사법제도와 소송외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 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박종현, “말레이시아의 사법체계”, 최신외국법제정보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송도영, “한국 내 이슬람(할랄) 음식의 소비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2권 제1호, 한국중동학회, 2011.
- 이동훈, “베일에 가려진 16억 무슬림 시장 공략법”, SERI경영노트 제79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

참고 문헌

- 한동훈 외 2인,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9.
- 홍성민, “이슬람법(Shariah)에 관한 연구”, 아프로아랍연구 창간호, 명지대학교 아랍아프리카센터, 1999 (인터넷 게재재 http://hopia.net/hong/file/mid02_Islamlaw.htm (2012. 9. 20 접속)).

<국외 문헌>

- Lu'ayy Minwer Al-Rimawi, Relevance of Sharia as a legislative source in a modern Arab legal context: a brief constitutional synopsis with emphasis on selected commercial aspects, 32(2) Company Lawyer 57, 2011.
- French Association of Muslim Consumers, Survey on the Halal Certification Agencies - Year 2009, AIDSCOM, 2009.
- Global Business Policy Council, AT Kearney, A Glimpse into the Global Future, December 10, 2007.
- Mariam Abdul Latif, Definition of Halal Terms and Malaysia Halal Standards and Industries, January 24, 2011.
- Pew Research Center, 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Projections for 2010-2030, January 27, 2011.
- _____ , The World's Muslims: Unity and Diversity, August 9, 2012.
- 財団法人食品産業センター 「マレーシアハラール制度の実務」 2010. 3.
- 並河良一 「ハラール制度の概要・実務と市場開拓のハードル」 2011. 4.
-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ハラール産業に対する理解」 2009. 12.

<인터넷 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Official Website,
<http://www.statistics.gov.my/>

e-Fatwa, “What is Fatwa”, Portal Rasmi Fatwa Malaysia, <http://www.e-fatwa.gov.my/apa-itu-fatwa>.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http://www.hdcglobal.com/>

The Malaysia Government’s Official Portal, <http://www.malaysia.gov.my/EN/Relevant%20Topics/IndustryInMalaysia/Business/AgricultureAndAgroBasedIndustry/AgroHalalCertification/AgroActOnHalal/Pages/AgroActOnHalal.aspx>